

주요국의 반덤핑 규정상 특별한 시장 상황 및 관련 사례 연구

2020. 12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노 영 예 선임연구원

목 차

I. 서론	7
II. 특별한 시장 상황과 관련된 국제 규범	10
1. WTO 규정 중 특별한 시장 상황	10
2. 비시장경제 국가	14
III. 주요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규정	19
1. 미국	19
가. 개정 배경	20
나. 「무역특혜연장법」상 특별한 시장 상황	21
다. 「관세법」상 특별한 시장 상황	23
2. EU	28
가. 개정 배경	29
나. Regulation(EU) 2016/1036 및 Regulation(EU) 2017/2321상 특별한 시장 상황	30
3. 캐나다	37
가. 제1차 특별한 시장 상황 관련 법 개정의 배경 및 내용	38
나. 제2차 특별한 시장 상황 관련 규정 개정의 배경 및 내용	41
4. 호주	45
가. 개정 배경	46
나. 「관세법」, 「관세규정」,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매뉴얼」상 특별한 시장 상황 ..	49
5. 영국	54

IV. 최근 특별한 시장 상황 규정 적용 사례	60
1. 미국 대 한국 적용 사례	60
가. 개요	60
나. 분쟁 내용	61
다. 판결 이후 관련 현황	64
라. 기타 관련 분쟁 현황	66
2. 호주의 대 인도네시아 사례	68
가. 개요	68
나. 분쟁 내용	69
다.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한 패널의 결정	72
V. 국제비교 및 결론	80
1. 국제비교	80
가. 특별한 시장 상황 규정 비교	80
나. 생산비용 산정 방식 비교	81
다. 정부 개입 관련 내용 반영	82
2. 결론	83
가. 특별한 시장 상황 관련 규정 도입 및 활용	83
나. 수출기업의 사전준비 및 민관 협력	86
참고문헌	91

표 목차

〈표 II-1〉 WTO 「반덤핑 협정」 제2조 덤핑의 결정상 특별한 시장 상황 규정	12
〈표 II-2〉 GATT 1947 부속서 1주 제6조에 관한 보충규정 제1항	14
〈표 III-1〉 미국 「관세법」상 통상적인 거래에 대한 정의	23
〈표 III-2〉 미국 「관세법」상 정상가격 결정에 대한 정의	24
〈표 III-3〉 미국 「관세법」상 구성가격	25
〈표 III-4〉 Regulation(EU) 2016/1036 덤핑의 결정 중 특별한 시장 상황	32
〈표 III-5〉 Regulation(EU) 2017/2321 덤핑의 결정 중 증대한 왜곡 존재 시 정상가격 구성요소	33
〈표 III-6〉 Regulation(EU) 2017/2321의 덤핑의 결정 중 증대한 왜곡의 판단 요소	35
〈표 III-7〉 Regulation(EU) 2017/2321상 증대한 왜곡 보고서	36
〈표 III-8〉 「특별수입조치법」 제1장 제15절 특별수입조치 정상가격, 수출가격, 덤핑률 및 보조금률, 정상가격	40
〈표 III-9〉 「특별수입조치규정」 제1장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제3절 정상가격 조정· 제11조 생산비용과 기타 비용의 제11.2조(2)	44
〈표 III-10〉 호주 「관세법」 제15B장 반덤핑 관련 특별한 조항상 특별한 시장 상황 관련 규정	50
〈표 III-11〉 호주 「관세규정」 제8절 반덤핑관세 제1장 통상적인 무역거래상 특별한 시장 상황 관련 규정	51

〈표 III-12〉 무역구제규정(덤핑 및 보조금) 제2장 정상가격 결정상 제7조 및 제8조의 특별한 시장 상황 관련 규정	57
〈표 III-13〉 무역구제규정(덤핑 및 보조금) 제2장 정상가격 결정상 제11조의 특별한 시장 상황 관련 규정	58

I. 서론

-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수입국 규제 당국들은 WTO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 범위에서 벗어나 보다 예외적인 조사기법을 도입 및 적용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함
 - WTO 협정의 문구 중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거나 자주 활용되지 않던 문구를 새롭게 해석하여 규제 당국의 재량권을 늘리는 조항들을 도입하고 있음¹⁾

- 특히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만료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미국과 EU 등은 반덤핑과 관련한 예외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으며 특별한 시장 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이하 특별한 시장 상황)은 대표적인 반덤핑 제도의 예외 규정임
 - 특별한 시장 상황은 특정 국가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므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미국이 선행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음
 - 반덤핑 제도는 미국, EU 등 다양한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무역구제조치임

- 특히 미국은 「무역특혜연장법」을 개정하여 특별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 상무부는 법 개정 이후 2017년 4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 연례재심에서 최초로 특별한 시장 상황을 적용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였음
 - WTO 협정문 차원에서 언급된 것은 WTO 「반덤핑 협정」 제2.2조가 유일하지

1) 정경록,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KIET 산업경제』, 2020년 5월호, 산업경제연구원, 2020, p.77

만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판단 기준은 협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WTO 판례에서도 확립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함

- WTO 출범 후 전 세계 무역구제 제소 및 피소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누적 건수 기준으로 반덤핑 제소는 세계 제12위이나 피제소로는 세계 제2위를 차지하는 등 다른 나라 반덤핑 조치의 주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반덤핑관세(1995년 1월~2019년 12월) 누적 기준 제소 및 피제소 건수를 살펴보면 제소의 경우 총 152건이 적용되었으며, 피제소의 경우 총 447건이 적용되었음²⁾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주요국들의 반덤핑 규정상 특별한 시장 상황 규정 및 이를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또한 이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시장 상황과 관련된 규정을 도입한 국가 중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국가를 포함하여 미국, EU, 캐나다, 호주, 영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규정의 개정 배경, 내용 등을 조사하였음
 - 특별한 시장 상황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중 정찬모(2017), 장승화(2019)에서는 특별한 시장 상황의 WTO 규정과의 합치성과 미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규정에 대해 분석하고 WTO에 제소할 것을 제안하였음
 - 이재민(2018)에서는 특별한 시장 상황 조사기법에 대한 WTO 규정과의 합치성, 특별한 시장 상황 조사기법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규정 도입 및 상계관세 조사 실행 사전준비에 대해 제안하였음
 - 김만길(2019)에서는 미국과 EU의 특별한 시장 상황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기업 차원의 실무적인 대비, 정부 차원에서 국가들과 공동대응, 국제협력 등의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음

2)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월간 통계 (20. 11월 말 기준)」, 『무역구제』, Vol. 71, 2020. 12. 18., p. 192

- 또한 최초로 특별한 시장 상황 규정이 적용되었던 미국과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 사례와 WTO 패널 최초로 특별한 시장에 대한 정의를 일부 해석한 호주와 인도네시아 A4 복사용지 사례를 조사하였음

- 본 연구는 제 I 장 서론을 포함하여 총 5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 II 장 특별한 시장 상황과 관련된 국제 규범에서는 WTO의 규정 및 비시장 경제 국가에 대한 개념을 다루며, 주요국이 특별한 시장 상황과 관련된 예외 규정을 도입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였음
 - 제 III 장 주요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규정에서는 미국, EU, 캐나다, 호주, 영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관련 규정의 개정 배경, 내용, 적용 현황 등을 설명하였음
 - 제 IV 장 특별한 시장 상황 규정 적용 사례에서는 미국이 「무역특혜연장법」 개정으로 특별한 시장 상황을 도입한 후 최초로 적용한 사례인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 사례와 WTO 패널이 최초로 특별한 시장 정의를 일부 해석한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A4 복사용지 사례의 주요 분쟁 내용을 간략히 다루었음
 - 제 V 장 국제 비교 및 결론에서는 앞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하였음

II. 특별한 시장 상황과 관련된 국제 규범

1. WTO 규정 중 특별한 시장 상황

- 반덤핑의 일반적 개념은 국내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해외에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의미함
 - WTO 「반덤핑 협정(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WTO 반덤핑 협정)」 제2조(덤핑의 판정)에서는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물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물품은 덤핑된 것으로 판단함

- WTO 「반덤핑 협정」에서는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해 예외적인 거래의 예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한 정의는 두고 있지 않음
 - 각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본 규정은 일반적으로 사례를 통해 해석되어 WTO 기타 규정과 합치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함

- WTO 「반덤핑 협정」 제2조 덤핑의 판정 중 제2.2조에서 예외적인 거래에 대한 가격 비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³⁾

3) 외교통상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http://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185, 검색일자: 2020. 12. 1.

- 다음의 경우 덤핑마진은 동종 물품의 적절한 제3국 수출 시 비교 가능한 가격으로서 대표적인 경우 동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가격과의 비교에 따라 결정함
 - 수출국의 국내 시장 내에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동종 물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 수출국 국내 시장의 특별한 시장 상황 또는 소규모의 판매 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 수출국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는 동종 물품의 판매가 고려대상 물품의 수입 회원국에 대한 판매의 5% 또는 그 이상을 접하는 경우, 이러한 판매는 일반적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충분한 규모가 되는 것으로 간주됨
 - 단 그 비율 이하의 국내 판매가 적절한 비교 제공을 위해 충분한 규모라는 증거가 제시될 경우에는 낮은 비율도 수락 가능해야 함
 - 제2.2.1.1조에 따라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이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을 따르고 있고 고려 중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 비용은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에 기초하여 산출됨
- WTO 「반덤핑 협정」 제2.2조의 연원은 케네디라운드 반덤핑 코드에서부터 찾을 수 있으나, 규정이 적립된 이후 우루과이라운드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시장 상황의 정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⁴⁾
- 정부의 가격 통제가 있는 상황을 넓게 포괄하는 미국의 견해와 독점적 통제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일본의 견해가 산발적으로 제시되었을 뿐 합의 없이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음

4) 정찬모, 「미국 반덤핑법상 '특별한 시장 상황'의 적용과 WTO협정」,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3호, 2017, pp. 54~56

〈표 II-1〉 WTO 「반덤핑 협정」 제2조 덤핑의 결정상 특별한 시장 상황 규정

Article 2 Determination of Dumping

2.2 When there are *no sales of the like product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in the domestic market of the exporting country or when, because of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or the low volume of the sales in the domestic market of the exporting country¹⁾, such sales do not permit a proper comparison, the margin of dumping shall be determined by comparison with a comparable price of the like product when exported to an appropriate third country, provided that this price is representative, or with the cost of production in the country of origin plus a reasonable amount for administrative, selling and general costs and for profits.

1): Sales of the like product destined for consumption in the domestic market of the exporting country shall normally be considered a sufficient quantity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normal value if such sales constitute 5 percent or more of the sales of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to the importing Member, provided that a lower ratio are acceptable where the evidence demonstrates that domestic sales at such lower ration are nonetheless of sufficient magnitude to provide for a proper comparison)

2.2.1.1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2, *costs shall normally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records kept by the exporter or producer under investigation, provided that such records are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of the exporting country* and reasonably reflect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and sale of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하략

자료: 외교통상부, 「1947년 GATT 협정문(국문본)」, http://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22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8, 검색일자: 2020. 2. 14.

-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7, 이하 GATT 1947) 부속서 1주(註)와 제6조에 관한 보충규정 중 제1항에 따르면 가격 비교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⁵⁾
- GATT 1947 제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1항에서 반덤핑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5) 외교통상부, 「1947년 GATT 협정문(국문본)」 http://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22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8, 검색일자: 2020. 12. 14.

- 일국의 물품이 그 물품의 정상가격보다 낮게 타국의 상거래에 도입되는 것이
 채약당사자 영토 내의 기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
 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이러한
 덤핑은 비난의 대상이 됨
 - 부속서 1주와 제6조에 관한 보충규정 중 제1항의1: 제후된 업체에 의한 은폐된
 덤핑(즉 수입자가 제후하고 있는 수출자가 낸 송장가격에 상응하는 가격 미만인
 고 수출국 가격의 미만으로 수입자에 의한 판매)은 수입자에 의하여 재화가 재
 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하여 그 덤핑마진이 산정될 수 있는 가격덤핑의 한 형
 태를 구성함
 - 부속서 1주와 제6조에 관한 보충규정 중 제1항의2: 다음의 경우 제1항의 목적
 상의 가격 비교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
 - 해당 국의 무역을 완전하게 또는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독점하고 모든 국내가
 격이 국가에 의해 정하여지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 이 경우 수입 채약당사자가 동 국가에서 국내가격과의 엄격한 비교가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수 있음
- GATT 시기의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와 브라
 질의 면실(Cotton yarn) 사건에서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해 언급하였음⁶⁾
- GATT 패널은 유럽경제공동체가 높은 물가상승률을 통제하기 위한 환율 동결로
 인해 특별한 시장 상황이 되자 제대로 된 가격 비교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경제공동체 국내 시장가격을 폐기했다는 브라질의 주장을 거부했음
 - 특히 특별한 시장 상황의 존재만으로 수출국 국내가격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
 는 없다고 강조하였음
 - 환율동결이 목적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적절한 비교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
 로 국내 판매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6) WTO, "Australia — 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Report Of The Panel," 2019,
p. 17

〈표 II-2〉 GATT 1947 부속서 1주 제6조에 관한 보충규정 제1항

ANNEX I Notes and Supplementary Provisions Ad Article VI. Paragraph 1
<p>1. Hidden dumping by associated houses (that is, the sale by an importer at a price below that corresponding to the price invoiced by an exporter with whom the importer is associated, and also below the price in the exporting country) constitutes a form of price dumping with respect to which the margin of dumping may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price at which the goods are resold by the importer.</p> <p>2. It is recognized that, in the case of <i>imports from a country which has a complete or substantially complete monopoly of its trade and where all domestic prices are fixed by the State, special difficulties may exist in determining price comparability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and in such cases importing contracting parties may find it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that a strict comparison with domestic prices in such a country may not always be appropriate.</i></p>

자료: 외교통상부, 「1947년 GATT 협정문(국문본)」, http://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22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8, 검색일자: 2020. 2. 14.

- GATT 패널은 국내가격이 적절한 비교를 어렵게 하는 것, 즉 국내가격이 정상 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었을 것을 특별한 시장 상황의 본질적인 요소로 파악은 하였으나, WTO 패널에 의해 특별한 시장 상황의 정의를 해석하지는 않았음⁷⁾

2. 비시장경제 국가

- 비시장경제 국가는 중앙 계획경제체제하에 있는 국가로, 개인기업 또는 시장 지향적 경제체제로 이해되는 시장경제 국가 이외의 모든 국가를 의미함⁸⁾

7) Charles Zhan, *Australia's anti-dumping excuse against Indonesia is paper-thin says WTO*, moulislegal, <https://moulislegal.com/australias-anti-dumping-excuse-against-indonesia-is-paper-thin-says-wto/>, 검색일자: 2020. 12. 12.

- 중앙 계획경제체제는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국가 전체의 경제 운용을 주도하며,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경제활동이 이루어짐
- 따라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제품의 가격이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므로 가격이 생산요소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됨

-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소련연방의 붕괴로 인한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자유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등에 주요 비시장경제 국가들이 개방 및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음⁸⁾

- 이러한 개방에 따라 비시장경제 국가와 시장경제 국가 간 교역이 증가하면서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급증하게 되었음
- 특히 전통적인 비시장경제 국가로 여겼던 러시아, 중국은 세계 각국과의 교역량이 계속 증가하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반덤핑 제소의 주요 대상이 되었음

- 러시아 및 중국과 같은 국가는 비시장경제 국가로 분류되어 대부분의 경우 높은 덤핑율이 부과되어 왔기 때문에, 중앙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중임을 이유로 비시장경제국에서 제외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 왔음

- 그러나 계획경제체제의 요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온전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이들 국가 내 거래가격이나 생산요소가격을 덤핑마진 산정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음

- 특히 중국의 경우 세계무역기구 가입 15년 후 비시장경제국 분류에 따른 반덤핑

8) 삼정회계법인, 『반덤핑 조사 시 비시장경제국 적용에 관한 연구』, 2002, p. 4

9) 정혜선, 「최근 미국의 특별시장 상황(PMS) 적용과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Vol. 13, KITA, 2018, p. 8

조사 방식 적용을 종료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비시장경제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함¹⁰⁾

-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 시 비시장경제 국가 지위를 최장 15년 간 유지하기로 한 조건에 합의하였음
 - 중국 가입의정서 제15조 d항에 따르면 제15조 a항 ii호에 따라 중국의 비시장경제 국가 지위는 가입 후 15년 뒤 만료되도록 규정되었음
 -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국가 지위 부여를 반대하는 근거는 주로 중국 가입의정서 제15조 d항에서 대체국 가격 적용을 15년 이후에 중단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시장경제 지위를 자동 취득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임¹¹⁾
- 주요 반덤핑 제소국은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에 따라 비시장경제 국가로서 대우했으며, 2016년 12월 11일 해당 지위가 만료되어 미국과 중국 간 WTO분쟁 절차가 진행되었음
- WTO 반덤핑 규정은 덤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비시장경제 국가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 및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판정 기준도 존재하지 않아, WTO 회원국들은 자국 법률에 따라 교역 상대국의 시장경제 지위 여부를 결정함¹²⁾
 - 다만 GATT 제6조 주석에서 동종 물품의 거래가 독점체제하에서 이루어지거나, 가격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수출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의 비교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비시장경제 국가 특유의 가격 특성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음¹³⁾

□ 특히 중국의 경우 타국에 비하여 생산요소의 가격이 낮으므로 대체국가의 생산요

10) 정혜선, 「최근 미국의 특별시장 상황(PMS) 적용과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Vol. 13, 2018, KITA, p. 8

11) KIEP 북경사무소, 『중국 WTO 가입 15주년 회고와 전망』, KIEP, 2017. 1. 26., p. 11

12) KIEP 북경사무소, 『중국 WTO 가입 15주년 회고와 전망』, KIEP, 2017. 1. 26., p. 10

13) 삼정회계법인, 『반덤핑 조사 시 비시장경제국 적용에 관한 연구』, 2002, p. 5

소 가격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비시장경제 국에 대한 차별적 조사방식에 따라 고율의 덤핑마진을 부과할 수 있었음

- 한국의 경우 2005년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한 반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인도 등은 아직까지 중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특히 미국, EU 등은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할 경우 대표적인 수입방어 수단인 반덤핑 활용에 제약이 생겨 동 국가들은 중국산 물품의 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¹⁴⁾
 - 미국의 반대가 가장 강경하며, 2017년 상무부 장관이었던 프리츠커(Pritzker)는 2016년 11월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미국이 반덤핑 관세 계산방식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표명함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발생 후 유럽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 부여 시 저렴한 중국 상품이 대량 수입되어 사회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였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시장경제 국가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국인 미국과 EU가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음
- 기타 2020년 1월 14일 미국·EU·일본 3개 회원국의 통상장관은 산업보조금에 적용되는 WTO 보조금 협정의 개정 및 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주로 중국의 비시장 지향적 무역정책 및 관행을 겨냥한 것으로 보임¹⁵⁾
- 3국은 현행 WTO 「보조금 협정」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원국의 국내시장이 왜

14) KIEP 북경사무소, 『중국 WTO 가입 15주년 회고와 전망』, KIEP, 2017. 1. 26., p. 11

15) KIEP, 「미·EU·일 공동성명에 나타난 WTO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방향: 평가와 시사점」,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act=view&list_no=3444&cg_code=, 검색일자: 2021. 3. 16.

곡되어 있는 경우 상계관세율을 제대로 산정하기 위한 적절한 시장 설정 기준이 부재하다고 주장함¹⁶⁾

- WTO 「보조금 협정」 개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원국의 국내가격을 적절한 시장 기준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이 경우 국외가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제정할 것을 제안함
- 특히 제안이 나온 배경에는 미국이 중국에 비시장경제 방식으로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산정 방식이 WTO 규범에 합치하는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WTO 「보조금 협정」의 경우 WTO 「반덤핑 협정」과 달리 ‘특정 시장 상황’을 인정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중국에 대하여 비시장경제 방식으로 상계관세 마진을 높게 책정하는 미국의 방식이 현행 WTO 규정과 불합치할 소제가 있음
- 따라서 WTO 「보조금 협정」의 개정을 통해 비시장경제 국에 대한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를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16) 이효영,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논의와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시사점」, 『무역구제』, Vol. 68, 무역위원회, 2020, p. 13

Ⅲ. 주요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규정

1. 미국

- 미국의 반덤핑 제도는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702조(반덤핑관세의 부과)에서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문은 반덤핑 관세의 부과, 덤핑 조사 절차, 예비결정, 최종 결정 등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반덤핑 관세의 조사 및 판정은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이하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국제무역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¹⁷⁾
 - 미국 상무부는 덤핑관세 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산업피해조사 및 산업피해 판정을 담당하고 있음
 - 미국은 조사당국의 처분에 항변하기 위해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국제무역법원)을 통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상급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17) 정재호·노영예·박지우, 『주요국의 수입규제제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pp. 17~18

- 미국 법에서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지만 WTO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계획(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SAA)에서 특별한 시장 상황의 범위를 비교적 좁게 제안하고 있음¹⁸⁾
- SAA에서는 수출국 또는 제3국으로의 판매가격이 사용되기 적절하지 않을 시 상당히 엄격한 제한하에서만 실제 가격이 무시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음¹⁹⁾
 - 따라서 특별한 시장 상황은 주로 생산자가 기록한 비용이 부적절한 회계의 결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만 활용되었음
 - SAA는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해 물량의 충분성에 대한 검증이 ① 수출국 내 단 1건의 거래만으로 통과한 경우 ② 정부가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판매가격이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지 않은 경우 ③ 수출국의 수요에 대한 패턴이 미국과 다른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비교적 좁은 범위로 해석하고 있음²⁰⁾
 - 하지만 이 또한 예시일 뿐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니므로, 실제 조사 시에는 재량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가. 개정 배경

- 미국은 중국의 가입의정서 제15조 d항 규정의 종료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조사 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음²¹⁾
 -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간주하더라도 중국에 특별한 시장 상황이 존재할 시 조사대상 기업의 중국측 원가자료를 부인하고 미국 상무부 재량에 따라 구성가격을 산정하여 종전 수준의 반덤핑 세율을 유지하고자 함

18) 강민지,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법 개정과 시사점』, KIEP, 2018, p. 18

19) 강민지,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법 개정과 시사점』, KIEP, 2018, p. 18

20) 정혜선, 「최근 미국의 특별시장 상황(PMS) 적용과 시사점」, 『KITA통상리포트』, Vol. 13, KITA, 2018, p. 5

21) 정혜선, 「최근 미국의 특별시장 상황(PMS) 적용과 시사점」, 『KITA통상리포트』, Vol. 13, KITA, 2018, p. 5

-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보호무역 기조 아래 반덤핑 조사, 상계관세 조사와 같은 무역구제 조치를 위한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음
- 관련 조치의 상당 부분은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에서 2015년을 전후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한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음

나. 「무역특혜연장법」상 특별한 시장 상황

- 2015년 6월 29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이하 TPEA)을 서명 및 발효시킴으로써 미국 통상법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련된 내용은 본 법 제5부 반덤핑 및 상계 관세법 개선(Improvements to Anti 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시장 상황은 제504조에서 규정하고 있음²²⁾
 - 제501조: 소제목(Short Title)
 - 제502조: 절차에서 정보제출에 협력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Consequences of failure to cooperate with a request for information in a proceeding)
 - 제503조: 실질적 피해의 정의(Definition of material injury)
 - 제504조: 특별한 시장 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 제505조: 가격 또는 비용의 왜곡(Distortion of prices or costs)
 - 제506조: 자발적 답변자 수 축소를 통한 DOC 부담경감(Reduction in burden on DOC by reducing the number of voluntary respondents)

22) Congress.gov, "H.R.1295 -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1295/text>, 검색일자: 2020. 12. 9.

- 제507조: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적용(Application to Canada and Mexico)
- 「무역특혜연장법」 제504조에서는 특별한 시장과 관련하여 세 가지 개정 내용 및 개정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²³⁾
 - (a)항에서는 1930년 「관세법(U.S.C)」의 통상적인 거래(ordinary course of trade)에 대한 정의(19 U.S.C 1677(15),²⁴⁾ (b)항에서 정상가격 결정에 대한 정의(19 U.S.C. 1677b(a)(1)(B)(ii),²⁵⁾ (C)항에서는 구성가격(19 U.S.C. 1677b(e))²⁶⁾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주요 개정에 대한 내용 및 목적은 특별한 시장 상황하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지 않으며, 조사 당국이 제3국 판매가격에 대한 고려 없이 재량으로 구성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²⁷⁾
 - 특히 본 법 시행 이전에는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출국 국내시장 내의 물품 판매가 통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시 생산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미달 물품의 판매인지, 계열사 간의 물품 판매인지와 같은 판매의 성격을 고려하였음²⁸⁾
 - 본 법의 시행으로 통상적인 거래의 해당 여부를 상품의 생산비용 측면에서 고려하게 되었음

23) 미연방관보, “Dates of Application of Amendments to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Made by the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5/08/06/2015-19353/dates-of-application-of-amendments-to-the-antidumping-and-countervailing-duty-laws-made-by-the-trade>, 검색일자: 2020. 1. 5.

24) Tariff act of 1930 Section 771(15)

25) Tariff act of 1930 Section 773(a)(1)(B)(ii)

26) Tariff act of 1930 Section 773(e)

27) Congress.gov, “H.R.1295 -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1295/text>, 검색일자: 2020. 12. 9.

28) 이재민, 「반덤핑 조사에서의 PMS 판정」, 『국제통상연구』, 제23권 제4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18, p. 129

다. 「관세법」상 특별한 시장 상황

1) 통상적인 거래에 대한 정의

- 미국의 「관세법」상 통상적인 거래는 19 U.S.C 1677(15)에 따라 대상 물품을 수출하기 전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등급 또는 종류의 물품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조건과 관행을 의미함
- 조사 당국은 특별한 시장 상황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판매 및 거래를 통상적인 거래의 범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해당 거래에 ① 19 U.S.C 1677b(b)(1)에 따른 생산가보다 낮은 가격의 거래 ② 19 U.S.C 1677b(f)(2)에 따른 제휴사 간 직접 거래, 그리고 ③ 수출가격 또는 수출국의 국내 판매가격과의 적절한 비교를 방해하는 특별한 시장 상황이 존재한다고 조사 당국이 판단하는 거래가 있음²⁹⁾
 - 따라서 수출국에 특별한 시장이 존재할 시 조사대상 기업의 수출가격 및 구성 수출가격은 모두 통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정상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음

〈표 III-1〉 미국 「관세법」상 통상적인 거래에 대한 정의

19 U.S.C.1677(15)Ordinary course of trade
The term “ordinary course of trade” means the conditions and practices which, for a reasonable time prior to the exportation of the subject merchandise, have been normal in the trade under consideration with respect to merchandise of the same class or kind. The administering authority shall consider the following sales and transactions, among others, to be outside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Sales disregarded under section 1677b(b)(1) of this title. B) Transactions disregarded under section 1677b(f)(2) of this title. C) <i>Situations in which the administering authority determines that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revents a proper comparison with the export price or constructed export price.</i>

자료: 코넬 법률정보포털, “19 U.S.C 1677,”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677>, 검색일자: 2020. 12. 11.

29) 19 U.S.C 1677(15)

2) 정상가격에 대한 정의

- 개정 이전 「관세법」 19 U.S.C. 1677(a)(1)(b)(ii)에서는 수출국 또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소비용으로 외국 동종 제품이 판매(또는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가격(제3국의 판매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 ① 가격이 대표성을 가질 것 ② 수출업자나 생산업자가 타 국가에 판매하는 물량이 대비 수출물량의 5%이상일 경우 ③ 특별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조사당국이 국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 또는 구성 수출가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한 경우 - 「관세법」 개정으로 해당 제3국 시장 내(in such other country)의 내용을 삭제하여 제3국뿐 아니라 수출국에 특별한 시장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제3국의 판매가격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음

〈표 Ⅲ-2〉 미국 「관세법」상 정상가격 결정에 대한 정의

19U.S.C.1677(a)(1)(b)(ii) (Determination of normal value)(Price)

- ii) in a case to which subparagraph (C) applies, the price at which the foreign like product is so sold (or offered for sale) for consumption in a country other than the exporting country or the United States, if—
 - (I) such price is representative,
 - (II) the aggregate quantity (or, if quantity is not appropriate, value) of the foreign like product sold by the exporter or producer in such other country is 5 percent or more of the aggregate quantity (or value) of the subject merchandise sold in the United States or for export to the United States, and
 - (III) the administering authority does not determine that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in such other country) prevents a proper comparison with the export price or constructed export price.***

자료: 코넬 법률정보포털, “19 U.S.C 1677,”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677> 검색일자: 2020. 11. 29.; Congress.gov, “H.R.1295 -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1295/text>, 검색일자: 2020. 12. 9.

- 수입품의 구성가격은 19 U.S.C 1677b(e)에 따라 통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제품 생산 기간 동안의 원자재 및 제조비용, 제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종류의 기타 가공비용의 합계와 동일해야 함

- 원자재 및 제조비용 또는 기타 가공비용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특별한 시장 상황이 존재할 시 조사 당국은 이 절의 다른 계산방식 또는 기타 다른 계산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 (1) 문단의 목적상 원자재 비용은 그 원자재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에 따라 면제 또는 환급되는 원자재 혹은 그 처분에 부과되는 수출국의 내국세와 관계없이 결정되어야 함

- 개정 규정에서는 생산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것이 특별한 상황이라고 할 뿐 범위나 정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특별한 시장 상황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음
 - 또한 특별한 시장 상황이 존재할 시 다른 계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생산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구성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표 III-3〉 미국 「관세법」상 구성가격

19U.S.C1677b(e) Constructed value

(e) Constructed value.

For purposes of this subtitle, the constructed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shall be an amount equal to the sum of—(1) the cost of materials and fabrication or other processing of any kind employed in producing the merchandise, during a period which would ordinarily permit the production of the merchandise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중략

For purposes of paragraph (1), if 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exists such that the cost of materials and fabrication or other processing of any kind does not accurately reflect the cost of productio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 use another calculation methodology under this part or any other calculation methodology. For purposes of paragraph (1), the cost of materials shall be determined without regard to any internal tax in the exporting country imposed on such materials or their disposition that is remitted or refunded upon exportation of the subject merchandise produced from such materials.

하략

자료: 코넬 법률정보포털, “19 U.S.C 1677,”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677>, 검색일자: 2020. 11. 27.

- WTO 「반덤핑 협정」 제2.2조에서 특별한 시장 상황을 판매가격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기 힘들다, 조사 대상의 회계기록을 무시하고 생산비용을 산정한다면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

3) 적용 현황

- 현재 미국은 우리나라의 송유관(Welded line pipe, 이하 송유관),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이하 유정용 강관), 스탠다드 강관(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s, 이하 스탠다드 강관), 대형 구경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 이하 대형 구경강관)에 특별한 시장 상황을 적용하고 있음³⁰⁾
 - 송유관의 경우 미국 상무부는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과 같이 특별한 시장 상황을 적용 및 유지하였으며 2020년 11월 20일부터 예비판정 대비 상향 조정된 덤핑률 9.33~15.07%를 적용하였음³¹⁾
 - 유정용 강관의 경우 미국 내 평균 판매가격의 상승과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한 적용률의 하향으로 2021년 1월 25일 1.07%의 관세율을 산정하였음³²⁾
 - 네 가지 특별한 시장 상황 구성요소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방식은 유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시장 상황 존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결정을 내리고 있음³³⁾

30) KITA, 「미국통상정보」,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areaAcctoCmercInfo/usaCmercInfo/usaCmercInfoList.do?pageIndex=1&no=8733&searchReqType=LIST&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Keyword=pms>, 검색일자: 2020. 12. 25.; 국제무역위원회, “FR NOTICES WITH UNPUBLISHED DECISION MEMORANDA,” <https://enforcement.trade.gov/frn/summary/korea-south/korea-south-fr.htm>, 검색일자: 2020. 12. 25.에서 정보 확인

31) 미연방관보, “Welded Line Pipe From the Republic of Korea: Final Results of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2017-2018,”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11/30/2020-26336/welded-line-pipe-from-the-republic-of-korea-final-results-of-an-antidumping-duty-administrative-review>, 검색일자: 2020. 12. 26.

32) 미연방관보,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Republic of Korea: Preliminary Results of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2018-2019,”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01/25/2021-01498/certain-oil-country-tubular-goods-from-the-republic-of-korea-preliminary-results-of-antidumping-duty>, 검색일자: 2021. 1. 28.

3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A-580-870 Administrative Review,” <https://enforcement.trade.gov/frn/summary/korea-south/2020-15052-1.pdf>, 검색일자: 2020. 12. 16.

- 스탠다드 강관의 경우 2020년 11월 6일부터 한국 기업에 대해 특별한 시장 상황 적용을 유지하여 4.92~27.28%의 덤핑률을 산정하였음³⁴⁾
 - 대형 구경강관의 경우 2019년 2월 27일 7.03~20.39%의 덤핑률 적용 결정을 내렸으며,³⁵⁾ 반덤핑 및 상계관세 상황변동 재심으로 2020년 8월 21일 네 가지 품목에 대한 관세 제외 결정을 내렸음³⁶⁾
- 기존에 특별한 시장 상황이 적용되었던 강벽사각파이프(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 이하 강벽사각파이프)와 도금강판(Certain corrosion resistant steel product, 이하 도금강판)의 경우 특별한 시장 상황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강벽사각파이프는 2021년 1월 26일 예비판정에서는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음
 - 강벽사각파이프의 경우 2020년 11월 23일 국제무역법원의 지시에 따라 특별한 시장 상황을 적용하지 않고 덤핑률을 재산정하여 한국 기업에 하향 조정된 덤핑률 4.07~11.00%을 적용하고 있었음³⁷⁾
 - 도금강판의 경우 2020년 3월 17일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결정을 보류하고 있었던 특별한 시장 상황을 적용하여 2.43%의 덤핑률을 산

34) 미연방관보, "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 From the Republic of Korea: Final Results of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2017-2018,"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11/06/2020-24722/circular-welded-non-alloy-steel-pipe-from-the-republic-of-korea-final-results-of-antidumping-duty>, 검색일자: 2020. 12. 16.

35) 미연방관보, "Large Diameter Welded Pipe From the Republic of Korea: Final Affirm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9/02/27/2019-03318/large-diameter-welded-pipe-from-the-republic-of-korea-final-affirmative-countervailing-duty>, 검색일자: 2020. 12. 17.

36) 미연방관보, "Large Diameter Welded Pipe from the Republic of Korea: Final Results of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Changed Circumstances Review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8/21/2020-18385/large-diameter-welded-pipe-from-the-republic-of-korea-final-results-of-antidumping-duty-and>, 검색일자: 2020. 12. 17.

37) JUSTIA, "Dong-A Steel Co. v. United States, No. 19-00104 (Ct. Int'l Trade 2020)"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cit/19-00104/19-00104-2020-09-29.html>, 검색일자: 2020. 12. 17.

정하였으나,³⁸⁾ 2020년 11월 24일 예비판정에서는 특별한 시장 상황을 다시 적용하지 않았음³⁹⁾

- 냉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eel Flat)⁴⁰⁾은 2021년 1월 25일, 열연강판(Certain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⁴¹⁾은 2020년 10월 6일 특별한 시장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각각 판정은 하였으나 특별한 시장 상황을 적용률이 낮아져 덤핑률의 조정은 없었으며 각각 0.00%와 0.89%의 덤핑률이 산정되었음

2. EU

- EU의 반덤핑 관련 규정은 Regulation(EU) 2016/1037 및 이를 일부 개정한 Regulation(EU) 2017/2321, Regulation(EU) 2018/825를 적용하고 있음
- 반덤핑 피해 결정, 공동체 산업정의, 절차 개시, 조사, 잠정 및 확정조치 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38) 미연방관보,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Final Results of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and Final Determination of No Shipments; 2017-2018,”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3/17/2020-05489/corrosion-resistant-steel-products-from-the-republic-of-korea-final-results-of-antidumping-duty>, 검색일자: 2020. 12. 18.

39) 미연방관보,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Preliminary Results and Partial Rescission of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2018-2019,”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11/24/2020-25941/certain-corrosion-resistant-steel-products-from-the-republic-of-korea-preliminary-results-and>, 검색일자: 2020. 12. 18.

40) 미연방관보, “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Preliminary Results of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2018-2019,”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01/25/2021-01496/certain-cold-rolled-steel-flat-products-from-the-republic-of-korea-preliminary-results-of>, 검색일자: 2021. 1. 26.

41) 미연방관보, “Certain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Final Results of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and Rescission of Administrative Review, in Part; 2017-2018,”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10/06/2020-22053/certain-hot-rolled-steel-flat-products-from-the-republic-of-korea-final-results-of-antidumping-duty>, 검색일자: 2020. 12. 19.

- 반덤핑에 대한 조사, 심사, 부과 판정 등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U 집행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최종적인 부과 결정은 EU 이사회(European Council, 이하 EU 이사회)에서 담당하고 있음⁴²⁾
- EU의 덤핑방지 관세제도는 각 단계별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의 협의 여부에 따라야 하며, 자문위원회로부터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문을 받아야 함
- 만약 자문위원회가 집행위원회의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에 상정하여 투표로 가부를 결정해야 함

가. 개정 배경

- EU는 기존의 반덤핑 규정 Regulation(EU) 2016/1036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중국의 비시장경제 국가 지위 만료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2016년 11월 새로운 반덤핑 규칙을 제안하였음⁴³⁾
- 본 규정은 2017년 12월 4일 EU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12월 19일 관보에 게재되어 12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음
- EU는 개정 규정 Regulation(EU) 2017/2321을 통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왜곡이 발생하였을 시 기존의 비시장경제 국가 명단과 상관없이 시장 왜곡 여부에 따라 덤핑마진을 부과하게 되었음
- EU 집행위원회가 밝힌 규정 개정의 목적은 총 5개로 다음과 같음⁴⁴⁾
-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 만료에 따라 일부 조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

42) 정재호·노영예·박지우, 『주요국의 반덤핑 직권조사 규정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p. 46

43) 강민지,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법 개정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4, KIEP, 2018, p. 23

44) European Commission, "Possible change in the calculation methodology of dumping regard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6, p. 21

및 대응,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을 고려한 대응

- EU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성을 보장
 - 중국 및 다른 비시장경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왜곡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 덤핑 및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구제할 수 있는 구제수단의 확보
 - EU 무역 상대국과의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
- 또한 본 규정 개정에 따라 EU 집행위가 특별한 국가 및 특별한 시장의 왜곡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면 EU 기업이 이를 근거로 제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제소 시 상대 기업에 대한 입증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음

나. Regulation(EU) 2016/1036 및 Regulation(EU) 2017/2321상 특별한 시장 상황

1) Regulation(EU) 2016/1036상 특별한 시장 상황

- EU는 기존의 반덤핑 규정 Regulation(EU) 2016/1036의 제2조의3 및 제5조에서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해 일부 언급하고 있었으며, 중대한 왜곡 규정과 그 목적은 동일한 것으로 보임
-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동종 물품의 판매가 없거나 불충분하거나 특별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그러한 판매가 적절한 비교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동종 물품의 정상 가격은 다음에 의해 결정됨
- 동종 물품의 정상가격은 원산지국의 생산 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 및 이윤을 더한 가격 또는 동종 물품의 적절한 제3국에서 통상적인 수출 시에 비교 가능한 가격으로, 그 가격이 대표적인 경우 해당 가격과의 비교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 제2조의3의 첫 단락의 의미 내에서 관련 물품에 대한 특별한 시장 상황은 ① 특히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을 때 ② 상당한 물물교환 거래가 있을 때 ③ 비상업적 가공 약정이 있을 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EU의 「반덤핑 규정」 제2조의3 첫 단락은 WTO 「반덤핑 협정」 제2.2조와 비교했을 시, WTO 반덤핑보다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존재함⁴⁵⁾
 - 특별한 시장 상황이 동종 물품 판매가 없는 경우와 불충분한 경우 가운데에 위치한 WTO 「반덤핑 협정」과 달리 동종 물품 판매가 없는 경우 및 불충분한 경우의 뒤에 위치하여 둘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 가능함
 - 적절한 비교를 위해 국내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WTO 「반덤핑 협정」 제2.2조에서는 제3국 수출가격이 먼저 언급되었다면 EU 「반덤핑 규정」에는 구성가격이 먼저 언급되어 있음

- 특별한 시장 상황하의 생산비용 및 판매비용에 대해 조사 대상 기업의 장부가 해당 국가의 회계원칙에 따른 기록이며 고려 대상인 물품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비용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다면 일반적으로 그 장부를 기초로 계산한다고 규정함
 - 단 조사 대상 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비용이 관련 기업 장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을 시 해당 국가의 다른 생산자 혹은 수출자의 비용을 기초로 하거나 그러한 정보가 없거나 혹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대표 시장으로부터의 정보를 포함하여 다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설정되어야 함

- 따라서 EU의 「반덤핑 규정」 제2조의5에 따라 특별한 시장 상황에서 생산 비용 및 판매 비용을 인정함에 있어 조사기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대표시장을 포함한 그 어떤 정보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45) 정찬모, 「미국 반덤핑법상 특별한 시장 상황의 적용과 WTO협정」,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3호, 2017, p. 57

〈표 III-4〉 Regulation(EU) 2016/1036 덤핑의 결정 중 특별한 시장 상황

Regulation(EU) 2016/1036 Article 2. Determination of dumping

3. *When there are no or insufficient sales of the like product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or where, because of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such sales do not permit a proper comparison, the normal value of the like product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cost of production in the country of origin plus a reasonable amount for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costs and for profits, or on the basis of the export prices,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to an appropriate third country, provided that those prices are representative.*

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for the product concerned within the meaning of the first subparagraph may be deemed to exist, inter alia, when prices are artificially low, when there is significant barter trade, or when there are non-commercial processing arrangements.

5. Costs shall normally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records kept by the party under investigation, provided that such records are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of the country concerned and that it is shown that the records reasonably reflect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and sale of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If costs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and sale of the product under investigation are not reasonably reflected in the records of the party concerned, *they shall be adjusted or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costs of other producers or exporters in the same country or, where such information is not available or cannot be used, on any other reasonable basis, including information from other representative markets.*

자료: EU 법령제공포털, "REGULATION (EU) 2016/103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6R1036&from=EN>, 검색일자: 2020. 12. 6.

2) 증대한 왜곡 규정

- 수출국에 증대한 왜곡이 존재하여 국내가격과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정상가격은 왜곡되지 않았거나 기준 가격을 반영한 생산 및 판매비용에 기초하여 구성해야 함

- EU 집행위원회가 정상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음

- 관련 정보를 미리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 수출국의 경제적 발전 수준과 유사

한 수준의 적절한 대표국가의 생산과 판매비용을 사용하며, 만약 대표국가가 2 개 국가 이상일 시 사회 및 환경보호의 수준이 적절한 국가를 우선하도록 함

- 적절한 가격이라고 고려되었다면 왜곡되지 않은 국제 가격, 비용 또는 기준가격
- 국내비용(단, 적절하고 정확한 증거에 따라 형성된 범위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구성된 정상가격은 왜곡되지 않고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 이윤을 포함해야 함

□ EU는 중대한 왜곡이 존재할 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포함할 수(may) 있다고 표현하여, 포함 가능한 자료에 대해 EU 집행위원회 재량에 대한 여지를 둠

〈표 III-5〉 Regulation(EU) 2017/2321 덤핑의 결정 중 중대한 왜곡 존재 시 정상가격 구성요소

Regulation(EU) 2017/2321 Article 2
<p>6a(a) In case it is determined, when applying this or any other relevant provision of this Regulation,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use domestic prices and costs in the exporting country due to the existence in that <i>country of significant distortions</i> within the meaning of point (b), <i>the normal value shall be constructed exclusively on the basis of costs of production and sale reflecting undistorted prices or benchmarks, subject to the following rules.</i></p> <p>The sources the <i>Commission may use include:</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responding costs of production and sale in an appropriate representative country with a similar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s the exporting country, provided the relevant data are readily available; where there is more than one such country, preference shall be given, where appropriate, to countries with an adequate level of social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if it considers appropriate, undistorted international prices, costs, or benchmarks; or - domestic costs, but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are positively established not to be distorted, on the basis of accurate and appropriate evidence, including in the framework of the provisions on interested parties in point ©.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17, that assessment shall be done for each exporter and producer separately. The constructed normal value shall include an undistorted and reasonable amount for administrative, selling and general costs and for profits.

자료: EU 법령제공포털, "REGULATION (EU) 2017/23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1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7R2321>, 검색일자: 2020. 12. 11.

- 증대한 왜곡은 원자재와 에너지를 포함한 가격 또는 비용이 상당한 정부의 개입에 영향을 받아 자유시장의 힘에 대한 결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함

- 증대한 왜곡의 여부를 평가할 시 다음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요소가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함
 - 대상 시장에 수출국이 소유, 통제 또는 정책 감독 또는 지시하에 운영되는 기업이 상당한 정도의 점유를 하고 있는지 여부
 - 국가가 가격 또는 비용에 대해 기업에 개입이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공정책 또는 조치가 국내의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차별하거나 자유시장의 힘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 파산법, 기업법, 재산법의 부재, 차별적 적용 또는 부적절한 집행 여부
 - 급여가 왜곡되었는지 여부
 - 공공정책의 목적을 이행하거나 정부와 독립적으로 행위하지 않는 기관이 금융적인 접근을 승인했는지 여부(재정지원이 있었는지 여부)

〈표 III-6〉 Regulation(EU) 2017/2321의 덤핑의 결정 중 증대한 왜곡의 판단 요소

Regulation(EU) 2017/2321 Article 2.
<p>6a.(b) Significant distortions are those distortions which occur when reported prices or costs, including the costs of raw materials and energy, are not the result of free market forces because they are affected by substantial government intervention. In assessing the existence of significant distortions regard shall be had, inter alia, to the potential impact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eleme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he market in question being served to a significant extent by enterprises which operate under the ownership, control or policy supervision or guidance of the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y;</i> - <i>state presence in firms allowing the state to interfere with respect to prices or costs;</i> - <i>public policies or measures discriminating in favour of domestic suppliers or otherwise influencing free market forces;</i> - <i>the lack, discriminatory application or inadequate enforcement of bankruptcy, corporate or property laws;</i> - <i>wage costs being distorted;</i> - <i>access to finance granted by institutions which implement public policy objectives or otherwise not acting independently of the state.</i>

자료: EU 법령제공포털, "REGULATION (EU) 2017/23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1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7R2321>, 검색일자: 2020. 11. 11.

- EU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해당국 및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함
 - 특정 국가 또는 특정 국가의 특정 분야에서 심각한 왜곡이 존재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 본 반덤핑 규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EU 업계는 EU 집행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제소 또는 재심청구를 할 시 정상가격의 산정을 정당화할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가 증대한 왜곡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을 시, 개시 통지에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별도의 요청 없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EU 업계 또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제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수집의 부담이 경감됨을 알 수 있음

〈표 III-7〉 Regulation(EU) 2017/2321상 중대한 왜곡 보고서

Regulation(EU) 2017/2321 Article 2
<p>6a(c) Where the Commission has well-founded indications of the possible existence of significant distortions as referred to in point(b)in a certain country or a certain sector in that country, and where appropriate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is Regulation, the Commission shall produce, make public and regularly update a report describing the market circumstances referred to in point(b) in that country or sector.</p> <p>중략</p> <p>6a(d) When filing a complai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r a request for a review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i>Union industry may rely on the evidence in the report referred to in point (c) of this paragraph</i>, where meeting the standard of evidence in view of Article 5(9), in order to justify the calculation of the normal value.</p> <p>6a(e) Where the Commission finds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pursuant to Article 5(9), of significant distortions within the meaning of point (b) of this paragraph and decides to <i>initiate an investigation on that basis</i>, the notice of initiation shall specify that fact.</p>
<p>자료: EU 법령제공포털, "REGULATION (EU) 2017/23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1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7R2321, 검색일자: 2020. 11. 11.</p>

3) 적용 현황

- EU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중대한 왜곡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았으며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중대한 왜곡 보고서를 발행한 후 이에 근거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임
-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은행을 통제해 왜곡된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분야의 기업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아주 낮은 가격 혹은 무상으로 토지와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장이 왜곡되었다고 판단하였음⁴⁶⁾

46) 강민지,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법 개정과 시사점』, KIEF, 2018, p. 28

- 보고서에서는 중국 기업의 결정에 공산당이 상당 부분 관여하고 국유 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분야 기업에 저가 또는 무상토지와 에너지 공급, 낮은 급여, 철강, 알루미늄, 화학, 세라믹 분야의 공급 과잉 등을 지적하였음
- EU는 러시아에 대한 국별 시장 보고서⁴⁷⁾에서 정부에 의한 시장왜곡을 인정하여, 향후 러시아에 대해 시장가격이 아닌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⁴⁸⁾
 -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가격을 왜곡하는 정부 조치가 시장왜곡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

3. 캐나다

- 캐나다는 「특별수입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 이하 「특별수입조치법」) 및 「특별수입조치규정」(Special Import Measures Regulation, 이하 「특별수입조치규정」)을 통해 반덤핑 관세의 부과 조건, 부과내용,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의 수입규제 조사는 국내 산업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품의 덤핑 또는 보조금으로 인해 실질적 산업피해를 입었거나 향후 피해가 우려될 시, 국내업체가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이하 CBSA)에 제소함으로써 조사가 개시됨⁴⁹⁾

47) EU 집행위원회, "On significant distortions in the econom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the purposes of trade defence investigations,"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0/october/tradoc_158997.pdf, 검색일자: 2020. 12. 1.

48) KITA, 「EU, 러시아 시장왜곡 인정 국별보고서 발표... 고율 반덤핑 관세 발판」,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pageIndex=1&type=0&nIndex=1803656>, 검색일자: 2020. 12. 1.

49) KITA, 「수입규제가이드-캐나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Info/importcontrol/countryProcedureDetail.do?proNo=220>, 검색일자: 2020. 12. 11.

- 제소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제 조사가 시작되며, 최종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캐나다 정부는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조사에 근거하여 「특별수입조치법」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이하 국제무역재판소)는 해당 수입품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함

가. 제1차 특별한 시장 상황 관련법 개정의 배경 및 내용

1) 제1차 법 개정의 배경

- 부당하게 덤핑되거나 보조금을 받는 수입품에 대해 추가적인 체제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2018년 4월 26일 개정안 「특별수입조치법」 제16조(2)(c)를 발효하였음⁵⁰⁾
 - 캐나다의 「특별수입조치법」은 1996년에 마지막으로 검토되었으며 2018년까지 개정이 없었음
 - 그 후 몇 년간, 캐나다의 무역구제 시스템의 능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수출국 국내 시장의 가격 왜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반덤핑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음
- 2017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다 엄격한 대응 및 캐나다의 무역구제 시스템의 투명성을 개선하며 캐나다 주요 무역국이 취하는 무역구제 조치와 캐나다 무역구제 시스템을 일치시키고자 하였음
 - 2017년 예산안을 시행하기 위해 2017년 6월 22일 왕실의 동의를 받은 「예산 집행법」 제1호(Budget Implementation Act, 2017, No. 1 BIA1 2017)를 통

50) 캐나다관보, 「Regulations Amending the Special Import Measures Regulations and the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Regulations」, <http://www.gazette.gc.ca/rp-pr/p2/2018/2018-05-16/html/sor-dors88-eng.html>, 검색일자: 2020. 12. 16.

해 「특별수입조치법」에 대한 법 개정이 일부 이루어짐⁵¹⁾

- CBSA는 본 법을 통해 생산 비용 계산을 비롯하여 판매, 일반 및 관리 비용 및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금액을 추가하여 수출시장에 부과되는 가격을 결정하는 대체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음
 - 본 개정에는 특별한 시장 상황에서 가격 왜곡을 덤핑률 산정 시 해결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우회 방지에 대한 범위, 절차, 노동조합의 참여 등의 도입 또한 포함되어 있음

2) 제1차 법 개정의 내용

- 「특별수입조치법」 제16조(2)(C)에 새롭게 삽입된 규정에 따르면, 관세청장의 의견으로 수출국 국내 판매와 캐나다 수입자에 대한 판매의 적절한 비교를 불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시장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수출국의 가격을 정상가격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특별수입조치법」에 따라 특정한 판매는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자료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국내 판매 중 정상가격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⁵²⁾
 - 관계사와 맺은 판매(「특별수입조치법」 제15조(a)(i) 및 제16조(2)(a))
 - 캐나다 수입 기업과 다른 거래단계에 있는 고객과 맺은 판매(「특별수입조치법」 제15조(a)(ii) 및 제16조(2)(a))
 - 캐나다 수입 기업에 판매하는 수량과 비교해 현저히 다른 수량을 판매하는 국내 고객과의 판매(「특별수입조치법」 제15조(b))
 - 경쟁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거래가 아닌 판매(「특별수입조치법」 제15조(c))

51) 캐나다관보, 「Regulations Amending the Special Import Measures Regulations and the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Regulations」, <http://www.gazette.gc.ca/rp-pr/p2/2018/2018-05-16/html/sor-dors88-eng.html>, 검색일자: 2020. 12. 16.

52) 캐나다 법률제공포털,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S-15/> 검색일자: 2020. 12. 16.; 신맹호·곽범수·이경수, 『캐나다 수입규제제도 및 대응 매뉴얼』, 외교통상부, 2018, pp. 25~26

- 캐나다로 출하된 물품이 생산된 곳 외에서 만들어진 판매(「특별수입조치법」 제15조(e))
- 총국내판매 수량이 수출량의 5% 미만일 경우(「특별수입조치법」 제16조(1)(a))
- 정해진 180일 기간 내에 한 고객에게만 만들어진 판매(「특별수입조치법」 제16조(2)(a))
- 특정한 판매원가 이하 판매(「특별수입조치법」 제16조(2)(b))
 - 특정한 판매원가 이하 판매란 3단계의 테스트로 판정하며, ① 판매가 판매원가 이하로 맺어진 경우 ② 판매원가 이하로 판매된 품목 모델의 수량이 조사기간 동안 판매된 동품목 모델의 총물량의 20% 이상일 경우 및 조사기간 동안 판매원가 이하로 판매된 품목 모델의 평균 판매가격이 동품목 모델의 평균 판매원가보다 낮을 경우 ③ ②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판매 중 판매가격이 동종 물품 모델의 조사기간 평균 판매원가보다 낮을 경우
- 특별한 시장 상황이 존재하여 국내 판매와 캐나다 수출가격의 적절한 비교가 불가능할 경우(「특별수입조치법」 제16조(2)(c))

〈표 III-8〉 「특별수입조치법」 제1장 제15절 특별수입조치 정상가격, 수출가격, 덤핑률 및 보조금률, 정상가격

Part I. Special Import Measures 15. Normal Value, Export Price, Margin of Dumping and Amount of Subsidy Normal Value
16. Rules applied in determining normal value (2) In determining the normal value of any goods under section 15, there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중략 (c) <i>any sale of like goods for use in the country of export by the exporter to a purchaser if, in the opinion of the President, 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exists which does not permit a proper comparison with the sale of the goods to the importer in Canada.</i>
<i>Marginal note: Paragraph (2)(c)</i> 2.1) <i>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2)(c), 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may be found to exist in respect of any goods of a particular exporter or of a particular country, as i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i>

자료: 캐나다 법률제공포털, "Special Import Measures PART I. Normal Value, Export Price, Margin of Dumping and Amount of Subsidy,"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S-15/page-6.html#h-437736>, 검색일자: 2020. 12. 29.

나. 제2차 특별한 시장 상황 관련 규정 개정의 배경 및 내용

1) 제2차 규정 개정의 배경

- 캐나다 정부는 일자리와 산업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19년 4월 26일 추가적인 보호장치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산업계 및 해당 산업계 노동자들과 30일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할 것을 공표하였음⁵³⁾
 - 최근 몇 년 동안 캐나다 생산자들은 특히 철강 산업에서 무역구제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수입에 대한 대처 효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었음
 - 또한 전 세계적으로 철강 생산량의 과잉 공급이 지속되고 여러 국가가 철강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비추어 글로벌 철강무역 환경이 캐나다의 철강기업에 더욱더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

- 2019년 9월 4일 공표된 「특별수입조치규정」 개정안은 캐나다 철강산업이 제기한 투입 비용 왜곡에 대한 우려를, 무역구제체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⁵⁴⁾
 - 본 개정안은 불공정하게 거래되는 수입품의 영향으로부터 캐나다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캐나다 무역구제 시스템의 효과 증대를 목표로 함
 - 캐나다 교역상대국 생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체제를 캐나다 무역구제 시스템이 갖추게 되면서(예: 미국, EU, 호주 등) 불공정한 무역의 영향으로부터 캐나다 국내 생산자들에게 비슷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음

53) 캐나다관보, “Regulations Amending the Special Import Measures Regulations: SOR/2019-314,” <http://gazette.gc.ca/rp-pr/p2/2019/2019-09-04/html/sor-dors314-eng.html>, 검색일자: 2020. 12. 16.

54) 캐나다관보, “Regulations Amending the Special Import Measures Regulations: SOR/2019-314,” <http://gazette.gc.ca/rp-pr/p2/2019/2019-09-04/html/sor-dors314-eng.html>, 검색일자: 2020. 12. 16.

- 특히 CBSA가 덤핑의 마진을 계산할 시 특별한 시장 상황의 영향에 대해 수출국의 가격 왜곡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여 상대국에 덤핑에 대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역구제체제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함⁵⁵⁾

2) 제2차 규정 개정의 내용

- 개정된 「특별수입조치규정」은 CBSA가 반덤핑 조사에서 정상가격 결정 시 투입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수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⁵⁶⁾
-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 비용 이하 또는 대표 기준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관련 당사자로부터 이러한 물품에 대한 투입물을 구매했거나, 특별한 시장 상황이 존재하여 시장의 가격 및 투입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CBSA의 대처방안에 대해 규정함
 - 정부의 개입으로 가격이 왜곡되거나 거시 경제적 변동성에 따른 요인들이 시장의 가격과 투입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CBSA는 원산지의 생산원가에 관리, 판매 및 일반 비용과 이윤을 더하는 구성가격 방법론을 통해 재화의 대체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별한 시장과 관련된 개정은 정부가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세계 시장 가격보다 국내 시장에서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수출 제한이나 세금 등으로 투입가격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음⁵⁷⁾
 - 본 개정안은 CBSA가 WTO 「반덤핑 협정」 제2.2조에서 특별한 시장 상황 조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음

55) 캐나다관보, “Regulations Amending the Special Import Measures Regulations: SOR/2019-314,” <http://gazette.gc.ca/rp-pr/p2/2019/2019-09-04/html/sor-dors314-eng.html>, 검색일자: 2020. 12. 16.

56) 캐나다관보, “Regulations Amending the Special Import Measures Regulations: SOR/2019-314,” <http://gazette.gc.ca/rp-pr/p2/2019/2019-09-04/html/sor-dors314-eng.html>, 검색일자: 2020. 12. 16.

57) TEREPOSKY & DEROSE LLP, “Canada implements new anti-rules targeting related-company input dumping and “particular market situation” input distortions,” <https://tradeisds.com/canada-implements-new-anti-dumping-rules-re-input-cost-distortions>, 검색일자: 2020. 12. 28.

- 동종 물품의 수출국 내 판매와 캐나다의 수입자에 대한 판매를 적절히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시장 상황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가진 경우,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투입원가는 실제 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함⁵⁸⁾
- 따라서 관세청장이 특별한 시장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을 시 수출국의 투입원가는 캐나다 수입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적절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투입물의 실제 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다음의 금액으로 간주되어야 함
 - (a) 수출국에서 생산되고 수출국 또는 수출국의 다른 생산자에게 판매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투입물의 가격
 - (b) 수출국에서 생산되어 제3국으로 판매된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투입물의 가격
 - (c) 수출국에서 해당 투입물의 공시된 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투입물의 가격
 - (d) 제3국에서 생산되어 수출국 또는 수출국 내의 다른 생산자에게 판매되고, 제3국과 수출국 간의 가격 비교 가능성과 관련된 차이를 반영하도록 조정된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투입물의 가격
 - (e) 수출국과의 가격 비교 가능성과 관련된 차이를 반영하도록 조정된 수출국 외부에 공표된 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투입물의 가격
- 특히 본 규정에서 실제 원가의 의미는 특별한 시장 상황을 초래하는 왜곡이 없는 경우의 원가를 의미함⁵⁹⁾
 - 수출국에 특별한 시장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b), (d), (e) 세 가지 항목은 모두 특별한 시장 상황 및 해당 효과가 없는 수출국 이외의 투입물의 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임

58) 캐나다 법률제공포털, "Special Import Measures Regulations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84-927/page-2.html#docCont>, 검색일자: 2020. 12. 30.

59) TEREPOSKY & DEROSE LLP, "Canada implements new anti-rules targeting related-company input dumping and "particular market situation" input distortions," <https://tradeisds.com/canada-implements-new-anti-dumping-rules-re-input-cost-distortions>, 검색일자: 2020. 12. 6.

- (d)와 (e)에서 언급하는 수출국 간의 가격 비교 가능성과 관련된 차이를 반영하도록 조정되었다는 내용은 EU와 아르헨티나의 바이오디젤 사건에서의 WTO 상소기구(WTO Appellate Body, 이하 상소기구)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음
 - 이 분쟁에서 상소기구는 EU 조사 당국이 원가 생산을 계산하기 위해 국외 정보(예: 국제가격)를 사용할 때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의 생산 비용을 나타내도록 정보가 조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음

〈표 III-9〉 「특별수입조치규정」 제1장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제3절 정상가격 조정·
제11조 생산비용과 기타 비용의 제11.2조(2)

PART I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 3. Normal Value Adjustments
11. Cost of Production and Other Costs

- 11.2 (2)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11(1)(a)(i), if the President is of the opinion that, under paragraph 16(2)(c) of the Act, 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exists which does not permit a proper comparison of the sale of like goods with the sale of the goods to the importer in Canada, **such that the acquisition cost of an input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s does not reasonably reflect the actual cost of that input**, the cost of that input in the country of export shall be considered to be the first of the following amounts that reasonably reflects the actual cost of the input so as to permit a proper comparison:
- (a) the price of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inputs that are produced in the country of export and sold to the exporter or to other producers in the country of export;
 - (b) the price of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inputs that are produced in the country of export and sold from the country of export to a third country;*
 - (c) the price of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input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published prices of those inputs in the country of export;
 - (d) the price of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inputs that are produced in a third country and sold to the exporter or to other producers in the country of export, adjusted to reflect the differences relating to price comparability between the third country and the country of export; or*
 - (e) the price of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input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published prices outside the country of export, adjusted to reflect the differences relating to price comparability with the country of export.*

자료: 캐나다 법률제공포털, "Special Import Measures Regulations PART I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84-927/page-2.html](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84-927/page-2.html#docCont) #docCont, 검색일자: 2020. 12. 3.

- 상소기구는 수출국의 수출세 왜곡 효과를 없애기 위해 외국산 가격 사용을 사용한 EU의 결과를 거부했고, 외국산 가격 사용 자체가 외국산 가격이 수출국의 생산원가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국내산 가격을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음

3) 적용 현황

- 캐나다는 2019년 규정 신설 후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2019년 조사 개시 2건, 2020년 조사 개시 7건),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다른 국가에 본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없음⁶⁰⁾
 - 2019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멕시코의 특정 빨판(Sucker rods)에 대한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해 예비판정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조사 중에 있음
 - 2019년 터키의 특정내식강판(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sheet)에 대해서는 터키 국내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경제정책 계획, 정부 지원 프로그램, 주요 투입재료의 저가 수입 등을 조사하였으나 특별한 시장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2020년에는 특정 실내시트커버(Certain upholstered domestic seating)에 대해 베트남과 중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였음
 -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및 리투아니아의 밀 글루텐(Wheat gluten)의 경우 특별한 시장에 대해 예비판정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조사 중에 있음

4. 호주

- 호주는 2005년 중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하게 되었음

60) CBSA, "Dumping and subsidy investigations," <https://www.cbsa-asfc.gc.ca/sima-lmsi/i-e/menu-eng.html>, 검색일자: 2020. 12. 30.

- 그러나 반덤핑 관련 규정상 비시장경제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되자 특별한 시장 상황 조항을 적용하게 되었음⁶¹⁾
 - 중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시장 상황 조항의 적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

- 호주는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해 「관세법」(Customs Act 1901, 이하 「관세법」) 및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매뉴얼」(Dumping and subsidy manual 2018, 이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매뉴얼)에서 다루고 있음
 - 호주 「관세법」 제3절(Volume. 3)의 제15B장 반덤핑 관련 특별한 조항(Part XVB-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anti-dumping duties)에서 반덤핑 조사 절차, 대상, 조건, 부과내용 등에 대해 다루고 있음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매뉴얼」에서는 조사기간, 피해, 정상가격, 잠정조치, 평가 등 「관세법」에 대한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산업혁신과학부(Department of Industry, Innovation and Science, 이하 산업혁신과학부) 산하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 이하 반덤핑위원회)에서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를 수행함⁶²⁾
 - 반덤핑위원회가 산업혁신과학부 장관에게 반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권고하고 산업혁신과학부 장관이 부과를 결정함

가. 개정 배경

- 2011년 6월 호주는 반덤핑 시스템 간소화 및 반덤핑 제도(및 상계관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본 개선은 다음의 5가지 목표로 이루어졌음⁶³⁾

61) 정찬모, 「미국 반덤핑법상 특별한 시장 상황의 적용과 WTO협정」,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3호, 2017, p. 60

62) KITA, 「수입규제 가이드-호주」,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importcontrol/countryProcedureDetail.do?proNo=219>, 검색일자: 2020. 12. 11.

- ① 반덤핑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향상 ② 적시성 개선 ③ 의사 결정 향상 ④ 다른 국가와의 일관성 ⑤ 더 강력한 규정 준수

□ 특히 이 5가지 목표 중 ③ 의사 결정의 향상을 위해 다음의 여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중 한 가지로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⁶⁴⁾

- (전문가 활용 확대) 국제 무역구제 포럼(International Trade Remedies Forum, 이하 ITRF)과의 협의 후 결정되는 프로토콜에 따라 공인법 회계사, 산업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문가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함
- (특별한 시장 상황) 특별한 시장 상황 존재 시 제3국의 수출가격 사용 및 수출업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모든 관련 정보 고려 가능
- (새로운 항소 절차) 지원의 확대 및 엄격한 항소 절차 도입을 비롯하여 검토 담당관(Review Officer)이 항소 절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물질적 피해) ① 덤핑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에 대해 덤핑이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 새로운 시장 또는 확장된 시장에서 발생한 이익 및 기타 손해 또한 고려할 수 있도록 함 ② 덤핑 또는 기타요인으로 인한 피해 여부 결정 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시간 연장) 복잡한 사례의 수용을 위한 시간 연장을 모색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게 되며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투명성 확대) 본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접근 방식을 게시하고 조사 중에 발견된 덤핑 및 보조금 마진, 수출업체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 강화

□ 본 개선을 위해 호주의 특별한 시장 상황 조항의 효과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정

63) 호주 연방 입법부, "Customs Amendment (Anti-dumping Improvements) Bill (No. 2) 2011,"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1B00245/Explanatory%20Memorandum/Text#_Toc297899522, 검색일자: 2020. 12. 31.

64) 호주 연방 입법부, "Customs Amendment (Anti-dumping Improvements) Bill (No. 2) 2011,"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1B00245/Explanatory%20Memorandum/Text#_Toc297899522, 검색일자: 2020. 12. 31.

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할 ITRF의 실무 그룹을 설립하고자 함⁶⁵⁾

- 국제 무역구제 포럼의 실무 그룹에는 국내 산업 관련자, 수입자, 수출자뿐 아니라 관련 정부기관의 대표를 비롯한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으로서 참여하게 됨
- 특히 ITRF의 시장 상황조사위원회(Market Situation Working Group, 이하 MSWG)에 따른 관세 매뉴얼의 개선을 통해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이 성립되는 근거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음
 - MSWG는 이러한 근거 기준으로 특별한 시장 상황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특별한 시장 상황이 발견 되었을 시 호주 국경경비대(Australian Border Force)⁶⁶⁾는 수출국의 국내 판매가격 대신 구성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제안하였음

□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해 호주가 기존에(2011년까지) 제시하였던 매뉴얼은 다음과 같음⁶⁷⁾

- 통상 거래 과정에서 판매가 없거나, 판매량이 적거나, 특별한 시장 상황이 있어 국내 판매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계산하도록 함
 -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수출국의 비용을 사용하여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정상가격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제3국의 수출 가격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음
 - 수출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특정 상황에서는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매뉴얼에 대해 많은 이해 관계자가 특별한 시장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의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대안으로 제시된 개선 매뉴얼은 다음과 같음⁶⁸⁾

65) 호주 한국대사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호주 수입규제(반덤핑) 대응 매뉴얼』, 2013, p. 11

66) 호주 관세국경보호청(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음

67) 호주 한국대사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호주 수입규제(반덤핑) 대응 매뉴얼』, 2013, p. 11

68) 호주 연방 입법부, “Customs Amendment (Anti-dumping Improvements) Bill (No. 2) 2011,”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1B00245/Explanatory%20Memorandum/Text#_Toc297899522, 검색일자: 2020. 12. 31.

- 제품에 대한 원자재와 관련된 정부의 영향력 및 지원의 영향
 - 정부 소유 기업의 비율이 특별한 시장 상황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 정부 개입으로 국내 판매가격이 왜곡될 수 있는 기타 상황
 - 한 국가의 정부 또는 수출업체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시장 상황을 평가하는 방법 등
- 2012년 8월부터 발효된 개정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매뉴얼에서는 특별한 시장 상황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였음⁶⁹⁾
- ① 수출국 국내 시장의 수요 경향이 호주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② 상당한 물물교환(Barter Trade)의 존재 ③ 비상업적 과정의 존재

나. 「관세법」, 「관세규정」,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매뉴얼」상 특별한 시장 상황

1) 「관세법」상 특별한 시장 상황 규정

- 「관세법」 제269TAC(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수출국의 상황으로 「관세법」 제269TAC(2)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⁷⁰⁾
- 가격을 결정하는 목적과 관련이 있는 수출국 시장에서 유사한 상품이 판매되지 않거나 혹은 적은 양만 판매되는 경우
 - 「관세법」 제269TAC(2) 수출국 시장의 상황이 (1)항에 따른 가격을 결정할 때 수출국의 시장이 적절하지(market are not suitable) 않아 정상가격을 결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관세법」에서는 특별한 시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음
 - 「관세법」 제269TG항에서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을

69) 호주 한국대사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호주 수입규제(반덤핑) 대응 매뉴얼』, 2013, p. 11

70) Anti-Dumping Commission, *Dumping and Subsidy Manual*, Australian Government, 2018, p. 36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호주 산업부 장관이 반덤핑 조사 시 최소부과원칙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III-10〉 호주 「관세법」 제15B장 반덤핑 관련 특별한 조항상 특별한 시장 상황 관련 규정

Customs Act 1901 Volume3. Part XVB—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anti-dumping duties

269TAC Normal value of goods

- (1) Subject to this sec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the normal value of any goods exported to Australia is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like goods sold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for home consumption in the country of export in sales that are arms length transactions by the exporter or, if like goods are not so sold by the exporter, by other sellers of like goods.
- (1A)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the reference in that subsection to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like goods is a reference to that price after deducting any amount that is determined by the Minister to be a reimbursement of the kind referred to in subsection 269TAA(1A) in respect of the sales.
- (2) Subject to this section, where the Minister:(a) is satisfied that:
- (i) because of the absence, or low volume, of sales of like goods in the market of the country of export that would be relevant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a price under subsection (1); or
 - (ii) because the situation in the market of the country of export is such that sales in that market are not suitable for use in determining a price under subsection (1); the normal value of goods exported to Australia cannot be ascertained under subsection (1)*

269TG Dumping Duty

- (5A) However, subsection (5) does not require the Minister to have regard to the matter in that subsection if the Minister is satisfied that either or both of the following apply in relation to the goods in the consignment:
- (a) the normal value of the goods was not ascertained under subsection 269TAC(1) because of the operation of subparagraph 269TAC(2)(a)(ii);*

자료: 호주 연방 입법부, "Customs Act 1901,"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7C00219>, 검색일자: 2020. 12. 5.

- 호주 「관세규정(Customs (International Obligations) Regulation 2015)」 제 43조의2에서는 일반적인 무역 과정에서 생산 또는 제조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기록이 합리적일 경우, 산업혁신과학부 장관은 기록에 따른 정보로 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⁷¹⁾

- 동종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는 경우 수출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경우
- 동종 물품의 생산 또는 제조와 관련된 경쟁력 있는 시장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경우

□ 단 「관세규정」 제43조의8에서는 장관이 신뢰할 수 없는 정보라고 생각되면 모든 회계 관련 정보를 무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III-11〉 호주 「관세규정」 제8절 반덤핑관세 제1장 통상적인 무역거래상 특별한 시장 상황 관련 규정

Part 8, Anti-dumping duties Division 1, Ordinary course of trade

43. Determination of cost of production or manufacture

- (2) If: (a) an exporter or producer of like goods keeps records relating to the like goods; and
- (b) the records: (i) are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in the country of export; and
- (ii) reasonably reflect competitive market costs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or manufacture of like goods;
- the Minister must work out the amount by using the information set out in the records.

중략

(8) For this section, *the Minister may disregard any information that he or she considers to be unreliable.*

자료: 호주 연방 입법부, "Customs (International Obligations) Regulation 2015,"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5L00373>, 검색일자: 2021. 12. 15.

2)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매뉴얼」상 특별한 시장 상황 규정

□ 호주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매뉴얼」에서는 「관세법」 제3절(Volume.3)의 제15장

71) 호주 연방 입법부, "Customs (International Obligations) Regulation 2015,"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5L00373>, 검색일자: 2020. 12. 4.

반덤핑 관련 특별한 조항에 의거하여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한 내용과 조사에 대해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⁷²⁾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매뉴얼」에서는 「관세법」 제269TG항에서 언급하는 특별한 시장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국내 판매가격이 정상가격의 결정을 부적절하게 만드는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 특별한 시장 상황 존재 여부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매뉴얼」 제7장(수출업체의 국내 판매에 따른 정상가격)에서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수출국의 시장 상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제269TAC(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수출국의 상황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⁷³⁾
 - 가격이 인위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경우
 - 혹은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269TAC(1)에 근거하여 수출국 내의 물품 소비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 가격이나 비용에 대한 정부의 영향은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정부의 영향력은 정부의 단계와 수준과 상관없이 영향을 받는 모든 것을 의미함
- 반덤핑위원회는 정부의 영향력 때문에 특별한 시장 상황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면서, 정부의 국내시장 개입이 실질적으로 왜곡된 경쟁 조건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⁷⁴⁾
 - 경쟁 조건이 상당히 왜곡되었다는 사실은 국내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거나 경쟁

72) Anti-Dumping Commission, *Dumping and Subsidy Manual*, Australian Government, 2018, pp. 36~37

73) Anti-Dumping Commission, *Dumping and Subsidy Manual*, Australian Government, 2018, p. 36

74) Anti-Dumping Commission, *Dumping and Subsidy Manual*, Australian Government, 2018, pp. 36~37

- 시장에서 결정되었을 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정부가 경쟁 상황을 왜곡하고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을 초래하는 한 가지 예는 국내 시장에 정부 소유(국영)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정부 소유 기업의 수와 같은, 기업의 수익성이 없는 매출은 민간기업의 가격에 심각한 왜곡을 야기할 수 있음
 - 가격은 또한 정부의 영향력과 투입 비용 왜곡으로 인해 경쟁시장에서 인위적으로 낮거나 낮을 수 있음
 - 투입 비용에 대해 정부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를 부적절하게 만들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이러한 영향이 시장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함
 - 더불어 국내가격이 정상적인 경쟁시장에서 우세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함
- 제269TAC(1)항에 따라 가격 결정에 적합하지 않은 시장에 대한 기타 조건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⁷⁵⁾
- 수출국 국내 시장의 판매물품이 수출될 물품과 디자인, 특징 면에서 매우 달라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 하나의 업체가 호주 시장의 5%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 물물교환이 일어나는 경우
 - 약속에 대한 상업적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3) 적용 현황

- 호주는 주로 중국에 대해 특별한 시장 상황을 적용 및 조사하고 있으며, 그 밖에 베트남 및 러시아에 대해서도 특별한 시장 상황을 조사 중에 있음⁷⁶⁾

75) Anti-Dumping Commission, *Dumping and Subsidy Manual*, Australian Government, 2018, p. 37

76) 호주반덤핑위원회, "Anti-Dumping Commission current cases and the electronic public record," <https://www.industry.gov.au/regulations-and-standards/anti-dumping-and-countervail>

- 중국산 알루미늄 아연 코팅 강철(Aluminium zinc coated steel), 아연 도금 강철(Zinc coated (galvanised) steel), 중국의 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s)의 경우 재심사에 따라 중국의 특별한 시장에 대한 필수 사실 진술(Statement of essential facts)서 발표 후 최종 보고서 제출을 대기 중에 있음
- 중국 및 베트남의 알루미늄 아연 코팅 강철(600mm 미만), 중국의 동관(Copper tube), 베트남 및 중국의 색이 입혀진 포장용 대강(Painted steel strapping), 러시아의 질산 암모늄(Ammonium nitrate), 중국 및 베트남의 정밀강관(Precision pipe and tube steel)의 경우 특별한 시장 조사 중에 있음
- 중국의 강철 바(Steel reinforcing bar) 및 코일막대(Rod in coil) 경우 특별한 시장 상황의 적용으로 재심 후 반덤핑 관세가 확정되었음

5. 영국

- 영국은 독자적인 무역구제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무역구제조사국(Trade Remedies Investigations Directorate, 이하 TRID)이 EU에 취해진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전환 검토를 수행 중에 있음⁷⁷⁾
 - 전환 검토는 무역구제 조치가 영국 시장에 적합한지 여부와 이를 변경 또는 종료해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 따라서 특별한 시장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음
- 영국 TRID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등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담당하고 있으며 특별한 시장 상황 유무에 대한 결정 또한 담당하고 있음⁷⁸⁾

ng-system/anti-dumping-commission-current-cases 검색일자: 2021. 2. 6.; 호주 반덤핑위원회, "Anti-Dumping Commission Measures - Dumping commodity register," <https://www.industry.gov.au/regulations-and-standards/anti-dumping-and-countervailing-system/anti-dumping-commission-measures>, 검색일자: 2021. 1. 7.

77) 영국 국제무역부, "Trade remedies transition policy," <https://www.gov.uk/guidance/trade-remedies-transition-policy>, 검색일자: 2020. 12. 15.

78) 공수진, 「브렉시트와 영국 무역구제제도 현황 및 전망」, 『무역구제』, Vol. 64, 무역위원회, 2019,

- 영국은 2017년 11월 발의한 무역 법안에 따라 국제통상부 산하에 무역구제당국(Trade Remedy Authority, 이하 TRA)을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이 지연됨
 - 2019년 3월 정부는 TRA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무역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산하에 TIRD를 설립하였음⁷⁹⁾
 - TIRD는 TRA가 설립될 때까지 무역구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TRA와 관련된 전환에 대해서는 「덤핑 및 보조금 규정(Dumping and Subsidisation) (EU Exit) Regulations 2019)」(이하 덤핑 및 보조금 규정) 제13장(PART 13 Transitional provisions relating to the TRA)에서 다루고 있음
- 영국은 브렉시트를 준비하며 「2019년 무역구제 규정(덤핑 및 보조금)(The Trade Remedies(Dumping and Subsidisation) (EU Exit) Regulations 2019)」의 개정을 통해 특별한 시장과 관련된 판단, 적용, 가격산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⁸⁰⁾
- 무역구제에 관한 기본적인 틀(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관세부과, 무역구제에 대한 TRA 의무부과 등)은 2018 영국 「조세(국경간 무역)법」(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에서 다루고 있음⁸¹⁾
- 「무역구제 규정(덤핑 및 보조금)」 제7조(1)과 제7조(2)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자의 국내 시장에서 유사한 물품의 판매가격을 비교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도록 함
- 수출국 및 지역 내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동종 물품의 판매가 없는 경우

pp. 18~19

79) 영국 의회, "UK trade remedies policy," <https://committees.parliament.uk/work/492/uk-trade-remedies-policy/>, 검색일자: 2020. 12. 23.

80) 영국 국제무역부, "The TRID Pre-Application Office Updated 20 January 20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uk-trade-remedies-investigations-process/the-trid-pre-application-office>, 검색일자: 2021. 1. 26.

81) 영국 법률제공포털, "The Trade Remedies (Dumping and Subsidisation) (EU Exit) Regulations 2019,"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9/450/introduction/made>, 검색일자: 2020. 12. 15.

- 수출국 및 지역 내 국내 시장에서의 특별한 시장 상황이나 낮은 판매량 때문에 적절한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및 「무역규제 규정(덤핑 및 보조금)」 제7조(3)에서 규정하는 비교 가능한 범위를 제외한 경우
 - 「무역규제 규정(덤핑 및 보조금)」 제7조(3)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판매가격을 비교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영국으로 수출되는 관련 상품의 판매량의 5% 또는 그 이상인 경우 비교 가능함
 - 영국으로 수출되는 관련 상품의 판매량의 5% 미만을 차지하지만, TRA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교 가능함
 - 해외 수출자가 수출국 및 지역 내 국내 시장에서 동종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 「무역규제 규정(덤핑 및 보조금)」 제7조(4)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시장 상황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음⁸²⁾
- ①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은 경우 ② 상당한 물물교환이 있는 경우 ③ 가격이 비상업적 요인을 반영하는 경우
- 비교 가능한 가격이 없거나 「무역규제 규정(덤핑 및 보조금)」 제7조(2)에 따라 비교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TRA는 물품의 정상가격을 제8조에 따라 다음에 의거하여 결정하도록 함⁸³⁾
- 관리, 판매, 일반 비용 및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금액을 더하여 생산 가격을 결정함
 - 해당 가격이 대표적일 경우, 해당 제3국 또는 지역으로 수출될 때 동종 물품의 가격으로 결정함
 - 특정 외국 및 영토로부터의 수입과 관련한 정상가격 결정 규정(제14조)에 따르도록 함
 - 규정 제7조(2)(c)가 적용되는 경우, TRA는 수출국의 관련 상품에 대해 다른 해외 수출업자의 데이터를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음

82) 영국 법률제공포털, "The Trade Remedies (Dumping and Subsidisation) (EU Exit) Regulations 2019,"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9/450>, 검색일자: 2020. 12. 30.

83) 영국 법률제공포털,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9/450/made>, 검색일자: 2020. 12. 2.

〈표 III-12〉 무역구제규정(덤핑 및 보조금) 제2장 정상가격 결정상 제7조 및
제8조의 특별한 시장 상황 관련 규정

Chapter 2. Determination of the normal value

- 7(1) The TRA must use the comparable price to determine the normal value unless it is not appropriate to use that price.
- (2)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2) of Schedule 4 to the Act, it is not appropriate to use the comparable price to determine the normal value of the goods concerned where—
- (a) there are no sales of the like goods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in the domestic market of the exporting country or territory;
 - (b) *because, of 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or the low volume of sales in the domestic market of the exporting country or territory*, such sales do not permit a proper comparison between the like goods destined for consumption in the exporting country or territory and the goods concerned; or
 - (c) the overseas exporter in the exporting country or territory does not sell the like goods on the domestic market of the exporting country or territory.

중략

- (4)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2)(b), 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includes situations where—*
- (a) *prices are artificially low;*
 - (b) *there is significant barter trade;*
 - (c) *prices reflect non-commercial factors.*

- 8(1) Where there is no comparable price, or it is not appropriate to use the comparable pric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7(2), the TRA must determine the normal value of the goods
- (a) by determining the costs of production plus a reasonable amount for administrative, selling and general costs and for profits;
 - (b) by determining the price of the like goods when exported to an appropriate third country or territory provided that price is representative (see regulation 10); or
 - (c)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4 (normal value in respect of imports from particular foreign countries and territories) where that regulation applies.
- (2) Where regulation 7(2)(c) applies, the TRA may also calculate the normal value on the basis of the data from other overseas exporters of the goods concerned in the exporting country or territory.

자료: 영국 법률제공포털, “The Trade Remedies (Dumping and Subsidisation) (EU Exit) Regulations 2019,”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9/450/made>, 검색일자: 2020. 12. 2.

- 「무역구제 규정(덤핑 및 보조금)」 제11조(3)에 따라 생산원가는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의 해외 수출자가 보관하는 기록을 기초로 계산해야 하며, 해당 기록은 다음의 내용을 갖추어야 함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출국 또는 지역의 회계원칙에 따른 기록
 - 수출국 또는 지역에서 유사한 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기록

- 이상의 충족되지 않으면 TRA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생산비용을 직접 계산할 수 있음

〈표 III-13〉 무역구제규정(덤핑 및 보조금) 제2장 정상가격 결정상
제11조의 특별한 시장 상황 관련 규정

Chapter 2.Determination of the normal value
11.(1) The TRA must determine the costs of production of the like goods in the exporting country or territory for the purpose of regulation 8(1)(a) in accordance with this regulation. (2) Where paragraph (3) applies, costs of production of the like goods in the exporting country or territory must normally be calculated by the TRA on the basis of records kept by the overseas exporter of the goods concerned. (3) This paragraph applies where the records of the overseas exporter of the goods concerned— (a) <i>are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of the exporting country or territory; and</i> (b) <i>reasonably reflect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and sale of the like goods in the exporting country or territory</i>
중략 (5) <i>Where the records of the overseas exporter do not meet the criteria in paragraph (3) the costs of production may be calculated by the TRA using any other reasonable basis</i>

자료: 영국 법률제공포털, "The Trade Remedies (Dumping and Subsidisation) (EU Exit) Regulations 2019,"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9/450/made>, 검색일자: 2020. 12. 2.

- 정부의 개입으로 수출국 내 판매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져 특별한 시장 상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을 시, 국내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⁸⁴⁾
 - 상당한 정부의 개입이 존재하고 국내 판매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충분한 증거의 유무를 고려해야 함
 - 예를 들어 특별한 시장 상황이 동종 물품에 대한 상류 투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개입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조사는 철강에 관한 것이지만 정부 개입이 철광석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위적으로 낮은 투입물 가격이 수출자의 국내 시장에서 같은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함
 - 관련 투입이 하방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함
 - 해당 내용에 대한 판단 시 정부 개입의 목적은 관련이 없으며 단지 가격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만 특별한 시장 상황 결정과 관련이 있음

84) 영국 국제무역부, "Particular market situation and costs adjustments," <https://www.gov.uk/guidance/trade-remedies-investigations-directorate-trid-dumping-and-subsidisation-investigations-guidance/particular-market-situation-and-costs-adjustments>, 검색일자: 2020. 12. 23.

IV. 최근 특별한 시장 상황 규정 적용 사례

1. 미국 대 한국 적용 사례

가. 개요

- 국제유가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9년 급락한 후 2010년 1배럴당 60달러 선을 돌파하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미국 정부도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 개발을 적극 장려하기 시작함⁸⁵⁾
- 2012년에는 국제유가가 1배럴당 100달러 선까지 상승하여 2012년에는 유정용 강관에 대한 수요가 2008년 수준까지 회복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로 중국산 유정용 강관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한국, 인도 등 주요 강관 생산국들의 대 미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이에 미국 업계는 2009년 중국에 대한 조사에 이어 2013년 7월 2일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 대한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청원하였음⁸⁶⁾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규정은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최초로 적용되었음⁸⁷⁾

85) 김영주, 『2018 한·미 통상 현안 사례 분석집』, 한국무역협회, 2019, p. 16

86) 김영주, 『2018 한·미 통상 현안 사례 분석집』, 한국무역협회, 2019, pp. 61~63

- 미국은 2017년에 한국산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이하 유정용 강관)의 주재료인 열연강(Hot-rolled coil, 이하 열연강)의 한국 내 구매 가격이 특별한 시장 상황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연례재심에서 덤핑률을 2.76~24.92%로 높게 산정하였음
 - 이는 2016년 10월의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보다 2~3배 상향 조정된 덤핑률이었으며, 연례재심 예비판정 이후 추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최종판정에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와 백악관의 개입이 있었음⁸⁸⁾
- 미국은 한국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 대신 제3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구성가격을 산정하였음
- 유정용 강관 사례 이후로 2017년 12월 스탠다드 강관 및 2018년 1월 송유관 반덤핑 연례재심의 예비판정에서 유정용 강관에 적용된 특별한 시장 상황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었음

나. 분쟁 내용

1) 미국

- 미국 제소기업은 한국에 특별한 시장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해야 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주장하였음⁸⁹⁾
 - 저가의 중국산 열연강의 공급으로 유정용 강관의 한국 내 원자재인 열연강의 가격이 인하되었음

87) 김영주, 『2018 한·미 통상 현안 사례 분석집』, 한국무역협회, 2019, p. 16; 정혜선, 「최근 미국의 특별시장 상황(PMS) 적용과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Vol. 13, 2018, p. 6; p. 14

88) 정찬모, 「미국 반덤핑법상 특별한 시장 상황의 적용과 WTO협정」,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3호, 2017, p. 50

89) James Maeder, *Senior Director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Results of the 2014-2015 Administrative Review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2017, p. 30

- 한국 정부가 국내 열연강에 대해 의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 한국 열연강 생산자와 유정용 강관 생산자 간 전략적 제휴 관계가 열연강의 가격을 왜곡시킴
 - 한국 정부의 산업 정책 수단으로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 한국전력의 저렴한 전기 요금이 시장을 왜곡시켰음
- 또한 중국산 열연강 공급에 대해 한국이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구제책을 부과하지 않아 불공정하게 거래된 열연강이 유입되었다고 주장하였음⁹⁰⁾
- 미국 상무부에서는 예비판정에서 해당 상황이 전 세계적인 철강 가격 하락으로 인한 한국의 한 예시라고 하였으나 제소기업에서는 특별한 시장 상황은 단 하나의 시장에 존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국 상무부가 좁은 범위로 해석했다고 주장하였음
- 미국 제소업체는 한국의 열연강에 부과된 60%의 상계관세가 보여주듯 보조금이 유정용 강관 생산 비용을 정상가보다 훨씬 낮게 왜곡시켰다고 주장함
- 또한 투입된 초기 보조금은 물품의 생산 전반 및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산업 영역에 적용될 수 있음⁹¹⁾
 - 미국 국제무역법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나 WTO는 모든 원재료는 원재료를 사용하는 하방 산업(downstream)의 물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이라고 인정하고 있음
 - 이러한 보조금이 없었다면 한국산 유정용 강관 제품의 생산 가격은 더 높게 측정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90) James Maeder, *Senior Director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Results of the 2014-2015 Administrative Review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2017, pp. 32~33

91) James Maeder, *Senior Director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Results of the 2014-2015 Administrative Review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2017, p. 35

- 전략적 제휴에 대해 미국 제조업체는 한국 업체가 특별한 고객사에 전략적으로 열연강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여 「무역특혜연장법」상의 통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함
- 또한 한국 정부가 한국전력(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이하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으로 특별한 시장 상황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미국 상무부 또한 가장 큰 전기 공급처인 한국전력이 정부 산업정책의 도구라고 주장함⁹²⁾

2) 한국

- 한국 피소업체는 특별한 시장 상황은 특별(particular)하거나 독특(unique)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산 수입품에 따른 가격 변동은 한국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함⁹³⁾
 - 한국 시장의 가격 하락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한 미국 시장 가격 하락과 비슷해 한국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
 - 중국 철강 생산량에 대한 미국 업체의 주장은 법령과 사전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특정적'이지 않으며, 전 세계 시장에 만연해 있는 모습임
- 한국 피소업체는 보조금의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 업체가 생산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입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조사 기업의 비협조에 따른 불리한 가용 정보(Adverse Fact Available, 이하 AFA)의 적용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함⁹⁴⁾
 - 보조금이 해당 기업의 투입물 구매에만 반영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방 산업 생산자에게 보조금으로 인한 경쟁적 혜택을 제공했다는 결론을 정

92) James Maeder, 2017, p. 41

93) James Maeder, 2017, pp. 33~34

94) James Maeder, 2017, pp. 35~36

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함

- 또한 미국 상무부는 피제조 기업의 보조금률은 시장 상황이 아니고, 특별한 공급자 상황(particular supplier situation)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미국 상계관세 규정상 상위 산업(upstream industry) 물품에 대한 보조금이 하방 산업 물품의 생산 비용에 영향을 주고 경쟁적 이익을 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을 시에만 하방 산업 물품에 이를 상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한국 피소업체는 미국업체의 진술서(affidavit)상 원재료를 구매하고자 지급한 가격이 생산 비용 이하이거나 통상적 거래상황이 아니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전략적 제휴 관계가 모순이라고 반박하였음⁹⁵⁾
- 한국 피소업체는 중국산 수입품이 시장에 범람하는 상황에서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중국과 같은 다른 파트너에게 원재료를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타업체와 제휴 관계를 맺는다는 주장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하였음
- 한국 피소업체는 한국의 전기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특별한 시장을 구성할 정도로 독특하지 않으며, 타국의 정부가 에너지 시장에 관여하는 정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함⁹⁶⁾
- 이에 대해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전기가 원가 미만으로 판매되는 것도 아니고 열연이나 유정용 강관 생산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다. 판결 이후 관련 현황

- 미국 상무부는 판결을 통해 개별적으로 취해진 위의 네 가지 주장 중 어느 것도 물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통상적인 무역 과정에서 생산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함⁹⁷⁾

95) James Maeder, 2017, pp. 36~37

96) James Maeder, 2017, p. 39

- 미국 상무부는 전체적(as a whole)으로 고려하였을 때 네 가지 원인이 누적적인 효과(cumulative effect)를 발생시켜 유정용 강관의 생산 비용이 통상적 거래의 생산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왜곡되었다고 판정하였음⁹⁸⁾
 - 특히 중국 경제에 만연한 시장 왜곡과 국가 개입에서 비롯된 중국 철강생산 과잉의 결과로 한국 철강시장은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의 수입으로 넘쳐나고 있으며, 국내 철강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음
 - 또한 한국 정부는 유정용 강관의 주재료인 한국 열연강 생산업체에 60%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열연강은 유정용 강관 생산비용의 약 80%를 차지함
 - 전략적인 제휴가 검토 기간에 열연강의 가격 왜곡을 직접 초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나 분석의 한 요소로 관련이 되었음을 발견했고, 향후에도 열연강 가격에 왜곡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함⁹⁹⁾
 - 한국의 전기는 정부의 산업정책의 도구로서 이용 가능하며 가장 큰 전기 공급처인 한국전력은 정부의 지배를 받는 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적 이용이 가능함

- 미국 상무부는 특히 철강생산의 과잉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 왜곡을 야기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결정하였음¹⁰⁰⁾
 - 철강 과잉 생산은 철강의 상당한 가격 억제, 시장 왜곡, 지속 불가능한 용량 활용(unsustainable capacity utilization), 재무 실적의 하락, 폐업 및 해고를 포함한 세계 철강시장의 침체에 기여하고 있음
 - 철강 수요의 약화는 지속적인 철강의 생산 확장과 함께 국가별 철강시장에 더 큰 압력을 가하고 정부 개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창출하여 철강제품에 대한 생산 비용과 가격을 더욱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97) James Maeder, 2017, p. 40

98) James Maeder, 2017, p. 40

99) James Maeder, 2017, p. 42

100) James Maeder, 2017, p. 43

라. 기타 관련 분쟁 현황

- 유정용 강관은 2021년 1월 15일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도 여전히 특별한 시장 상황을 적용하고 있으나, 특별한 시장 상황 적용률의 하락과 미국 내 가격 상승으로 인해 덤핑률은 1.07%로 낮아진 상태임¹⁰¹⁾
- 2020년 7월 6일의 연례재심 확정판정에서는 한국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노력을 특별한 시장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로 포함시켰음¹⁰²⁾
 - 2016년부터 한국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세금 지원, 보조금, 대출, 직접자금 지원, 연구개발 지원, 규제 완화, 교육, 컨설팅 등의 형태로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을 왜곡시켰음
 - 미국 제조업체는 호주 철광석의 가격 왜곡과 열연강의 원자재 운반비용의 왜곡 또한 특별한 시장 상황 고려 요인으로 포함하여 원가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미국 상무부는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없음으로 결정하였음
- 송유관¹⁰³⁾ 및 스탠다드 강관¹⁰⁴⁾은 유정용 강관과 동일한 사유로 특별한 상황이 적용되고 있었으며, 미국 상무부는 전체적으로 네 가지 요소들이 누적되어 단일한 특별한 시장 상황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동일한 결론을 내렸음
- 왜곡된 가격으로 공급되는 원자재인 열연강이 송유관 및 스탠다드 강관 원자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01) 미연방관보,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Republic of Korea: Preliminary Results of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2018-2019,"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01/25/2021-01498/certain-oil-country-tubular-goods-from-the-republic-of-korea-preliminary-results-of-antidumping-duty>, 검색일자: 2021. 1. 29.

102) James Maeder,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Results of the 2017-2018 Administrative Review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on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Republic of Korea*, 2020, pp. 35~37

103) James Maeder,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Results of the 2017-2018 Administrative Review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on Welded Line Pipe from Kore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2020. 11. 20., p. 17

104) James Maeder, 2020. 11. 2., p. 16

- ① 한국 정부는 열연강 생산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했고 ② 중국에서 저가의 열연강이 수입되었으며 ③ 열연강 생산자와 송유관 및 스탠다드 강관 생산자 간의 전략적 제휴 관계가 있었고 ④ 한국 정부는 전력을 보조해 주었다고 판결하였음
- 송유관의 3차 연례재심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의 열연강 수출 상위 2위국으로, 중국의 열연강 수입가격은 한국이 타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가격보다 현저히 낮았음
 - 중국은 철강생산 능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철강 제조업체 및 수출국임
 - 또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열연강의 평균 단가는 중국이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열연강의 평균 단가보다 낮았다고 평가함
- 또한 유정용 강관과 마찬가지로 송유관, 스탠다드 강관 사례 모두 미국 상무부에서는 기업 개별 데이터를 통해 기업별로 별도의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결정함
- 특별한 시장에서 운영되는 한 회사가 비용과 관련된 시장 왜곡으로부터 격리될 수 없으므로 단일한 하나의 특별한 시장 상황에 속해 있다고 결정하였음
- 대형 구경강관 또한 상황 변동 재심에 따른 네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 이상의 사례들과 유사한 내용으로 특별한 시장 상황이 적용되고 있음¹⁰⁵⁾
 - 대형 구경강관의 경우 미국 상무부에서는 ① 평강(flat steel, 이하 평강)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조금 ② 중국으로부터 열연강의 덤핑 수입 ③ 평강 공급자들과 파이프 및 튜브 생산자와의 전략적 관계 ④ 한국정부의 전기 보조로 인하여 특별한 시장이 적용되고 있다고 결정하였음
- 또한 미국 상무부에서는 2019년 11월 이후 회귀분석모델을 사용하여 전 세계적 철강 과잉 생산이 열연강의 평균 수입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 있음¹⁰⁶⁾

105) James Maeder,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in the Less-Than-Fair-Value Investigation of Large Diameter Welded Pipe from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2019, p. 8

- 중국산 열연강 제품의 초과 공급과 세계적인 열연강 시장 간의 회귀분석으로 특별한 시장 상황을 증명하고자 하였음
- 한국 업체는 회귀분석에는 에너지 투입, 세계 경제성장 및 무역에 대한 외국의 장벽, 생산 수준, 운송비용과 같은 특정 변수가 부족하여 미국 국내 생산자에게 유리하게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¹⁰⁷⁾ 회귀분석은 유정용 강관, 송유관, 스텐다드 강관 등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2. 호주의 대 인도네시아 사례

가. 개요

- 2017년 9월 1일, 인도네시아는 A4 복사용지에 대한 호주의 반덤핑관세 조사 및 부과 결정과 관련하여 호주와의 협의를 요청함¹⁰⁸⁾
 - 인도네시아는 분쟁 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이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이하 DSU) 및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994)에 따라 WTO에 호주와의 협의를 요청하였음
 - 2018년 4월 27일, 캐나다, 중국, 한국, 러시아, 인도, EU, 캐나다, 미국 등으로 WTO 패널이 구성되었음
 - 호주는 인도의 A4 복사용지 생산업체에 35.4%, 38.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으며,¹⁰⁹⁾ 2018년 3월 9일, 호주 반덤핑심사위원회(Australian Anti-Dumping

106) 김경화, 「미국 특별시장 상황 적용관행의 변화와 국제무역법원 판정의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Vol. 5, 2020, p. 7; James Maeder, *Decision Memorandum for the Preliminary Results of the 2017-2018 Administrative Review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on 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2019, p. 11

107) James Maeder,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in the Less-Than-Fair-Value Investigation of Large Diameter Welded Pipe from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2019, p. 16

108) WTO, "Australia — 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Report Of The Panel," 2019. 12, p. 9,

Commission)의 권고에 따라, 해당 업체의 반덤핑 관세율은 각각 35.4%에서 30%로, 38.6%에서 33%로 인하시켰으나 여전히 고율의 세율을 유지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의 제2.2조 제2.2.1.1조와 관련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으며, 호주는 WTO 패널이 이 분쟁에서 인도네시아의 모든 주장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것을 요청하였음¹¹⁰⁾

- 2019년 12월 4일, 호주의 대 인도네시아 관세부과 취소 결정의 패널 보고서가 회원국들에게 회람되었으며, 2020년 1월 27일 회의에서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이하 DSB)는 패널의 보고서를 채택하였음¹¹¹⁾

- 호주는 2020년 9월 14일에 발행된 반덤핑 통지 2020/90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A4 복사용지에 대한 덤핑관세 통지를 취소할 것이라고 공지하였으며, 2020년 9월 17일 DSB에 분쟁에 대한 준수 사실을 통지하였음¹¹²⁾

나. 분쟁 내용

1) 호주의 WTO 제소 내용

- 호주는 인도네시아의 A4 복사용지와 관련된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에 특별한 시장 상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함
 - 조사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자재 및 보조금 등으로 시장을 왜곡시켜 인

109) WTO, "Australia — 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Report Of The Panel," 2019, p. 10

110) WTO, "Australia — 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Report Of The Panel," 2019, pp. 11~12

111) WTO, "Australia—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29_e.htm, 검색일자: 2020. 12. 12.

112) WTO, "Australia—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29_e.htm, 검색일자: 2020. 12. 12.

도네시아의 A4 복사용지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 정상가격을 결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함

- 호주는 WTO 「반덤핑 협정」 제2.2.1.1조에서 사용하는 ‘정상’은 정상적이고 평범하지 않은 수출자의 기록을 무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인도네시아 수출자의 펄프 기록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시장을 발견했다고 주장함¹¹³⁾
- 조사기간 동안 제공된 원자재 보조금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영향 때문에 A4 복사용지 가격이 비교 가능한 지역의 기준보다 인위적으로 낮아 정상가격을 결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목재 및 펄프산업에 대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농장들에 토지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나무 수출 금지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펄프 가격의 하락, 그리고 최종물품인 A4 복사용지 가격의 하락은 인도네시아 통나무 시장 또한 왜곡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함

2) 인도네시아의 반박

- 인도네시아는 호주 반덤핑위원회가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국내 판매가격이 아닌 구성가격을 사용했으며, 이는 WTO 「반덤핑 협정」 제2.2조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하였음¹¹⁴⁾
- 호주 반덤핑위원회가 국내 판매가격을 무시한 것은 인도네시아 A4 복사용지 시장 상황이 정상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했으며, 이는 WTO 「반덤핑 협정」 제2.2조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함

113) WTO, “Australia—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Report Of The Panel,” 2019, pp. 14~16; WTO, “Australia—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29_e.htm, 검색일자: 2020. 12. 12.

114) WTO, “Australia—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Report Of The Panel,” 2019, p. 13

- 인도네시아는 정상적 가격 산정 시 인도네시아 생산자들의 기록들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랐고 합리적으로 생산원가를 반영하였음에도 해당 기록에 근거하여 A4 복사용지에 대한 생산원가를 계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특별한 시장의 정의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국내 시장가격의 비교 가능성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쳐 수출가격과 비교되는 것을 막는, 예외적인 일련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음¹¹⁵⁾
- 대조적으로 호주는 특별한 시장 상황이 구별 가능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수출국 시장에서 동종 제품의 구매와 판매에 관한 조건, 상태 또는 상황의 조합이라고 주장함
 - 호주는 인도네시아는 특별한 시장에 대해 제한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WTO 「반덤핑 협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도 특별한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함
- 인도네시아는 호주 반덤핑위원회가 국내 판매가격의 적절한 비교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고, 단지 특별한 시장 상황을 발견한 것만으로 국내 시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함¹¹⁶⁾
 - 또한 인도네시아는 호주 반덤핑위원회의 특별한 시장 상황 조사결과의 근거가 왜곡된 투입비용이기 때문에, 국내 판매가격 자체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함
- 또한 A4 복사용지 공정의 특성상 투입비용이 왜곡되었다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A4 복사용지와 호주 시장에 수출되는 A4 복사용지를 제조하는 데 동일한 투입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함

115) WTO, "Australia—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Report Of The Panel," 2019, pp. 17~18

116) WTO, "Australia — 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29_e.htm, 검색일자: 2020. 12. 12.

- 이 상황에서 국내 판매와 수출의 가격은 똑같이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인도네시아는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인도네시아는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한 호주의 해석에 대해 다음의 내용은 특정 상황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117)
 - 제품의 투입비용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
 - 국내 시장 판매에 전적으로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
 - 정부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

다.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한 패널의 결정

- 특히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WTO 「반덤핑 협정」에 비추어 특별한 시장 상황이라는 문구의 통상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를 내세우며 대립하였음
- 패널은 인도네시아가 언급한 ① 제품의 투입비용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 ② 제품의 국내시장 판매와 수출판매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③ 정부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은 특별한 시장 상황의 배제 요소가 아니라고 결정하였음

1) 특별한 시장 상황의 의미

-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상황이 예외적이며 국내 시장가격의 비교 가능성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쳐 수출가격과 비교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호주는 상황이 구분 가능하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미라고 주장함
- 패널은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해 특별한 상황으로 구별되고 개별적이며 단일적이

117) WTO, "Australia — 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Report Of The Panel," 2019, p. 16,

며 특정적이어야 한다고(distinct, individual, single, specific) 결정하였음¹¹⁸⁾

- 특히 특별한 시장 상황이 국내판매를 부적절하게 만들어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련성이 있다는 EEC-Cotton Yarn(면사)의 GATT 패널의 결과에 동의하였음¹¹⁹⁾
 - 특별한 시장 상황이라는 용어는 조사 당국이 적절한 비교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다양한 상황을 예견하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 조사 당국이 고려해야 할 상황을 구성하는 상황이나 업무를 포괄적으로 식별하는 방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투입비용의 왜곡 제외

- 인도네시아는 특별한 시장 상황은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를 불가능하게 해야 하나, 수출과 국내판매를 위해 동일하게 투입된 원자재는 국내판매와 수출가격에 동등한 영향을 미치므로 비교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함¹²⁰⁾
- 원자재 비용이 국내 및 수출시장의 물품에 동일하게 투입되므로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에 WTO 패널은 양 시장의 가격에 반드시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음¹²¹⁾
 - 또한 원자재 비용이 국내 및 수출시장에 동등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특별한 시장 상황의 해석에 적합한 요소가 아니라 조사기관이 식별한 특별한 시장 상황

118) WTO, "Australia—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Report Of The Panel," 2019, p. 18

119) WTO, "Australia—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Report Of The Panel," 2019, p. 18

120) WTO, "Australia—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Report Of The Panel," 2019, p. 19

121) WTO, "Australia—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Report Of The Panel," 2019, p. 20

으로 인해 국내판매에 적절한 비교를 허용하지 않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결정하였음

- 호주 반덤핑위원회의 특별한 시장 상황 발견이 부분적으로 낮은 투입 비용에 기초했다고 해서 WTO 「반덤핑 협정」 제2.2조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여 해석의 여지를 두었음

국내 시장판매에 전적으로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

인도네시아는 특정 시장 상황은 국내 시장가격에 특히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쳐 수출가격과의 비교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시장 상황은 지리학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미이며 시장이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근거로 국내 시장에만 일방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반덤핑 협정」 제2.2조(즉 통상적인 교역 과정 외의 판매 및 저물량 판매)에서 두 가지 상황 모두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관련이 없으며 국내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음

WTO 패널은 수출국의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적절한 비교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특별한 시장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음¹²²⁾

- 한 기간 동안의 높은 생산비용은 모든 국내판매가 원가 미만이 되어 수출판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음
-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량 저조는 수출시장의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량의 결과로, 수출량과 관련하여 측정될 수 있음

122) WTO, "Australia—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Report Of The Panel," 2019, p. 22

- WTO 「반덤핑 협정」 제2.2조는 그 조항이 국내 시장판매가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적절한 근거인지 여부와 관계되는 이유로 국내 시장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근본적인 현상의 영향이 전적으로 일방적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결정하였음

☑ 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

- 인도네시아는 「반덤핑 협정」이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제되는 정부 행동의 영역에 개입시키는 방식으로 특별한 시장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함¹²³⁾

- 호주는 미국 상소기구(Appellate Body in US)의 「지속적 덤핑과 보조금 상쇄법」(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상 해석에서 덤핑이 보조금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덤핑의 구성요소가 발견되는 경우 덤핑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함¹²⁴⁾

- GATT 1994와 WTO 「반덤핑 협정」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수출품도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요소가 충족된다면 덤핑 조치를 승인할 수 있음¹²⁵⁾

-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제32.1조와 「반덤핑 협정」 제18.1조에 따르면 1994년도에 GATT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다른 회원국의 보조금 또는 덤핑된 수출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두 협정 모두 해당 규정의 제한은 1994년도 GATT의 다른 관련 규정에

123) WTO, “Australia—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Report Of The Panel,” 2019, p. 23

124) 2000년 10월 28일 발효된 법으로, 버드(Robert Byrd) 상원 의원의 주도로 발의되었기 때문에 ‘버드 수정안(Byrd Amendment)’이라고도 함

125) WTO, “Australia—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Report Of The Panel,” 2019, p. 24

따른 조치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석(주석 56, 24)으로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1994년 GATT 제18.1조에 따라 취한 반덤핑 조치는 「보조금 및 상계 조치 협정」 제32.1조의 운용으로 반드시 배제되지는 않으며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음¹²⁶⁾

□ 따라서 특별한 시장 상황 발견이 부분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특정 정책에 기초했다고 해서 WTO 「반덤핑 협정」 제2조 제2항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함

2) 기타 「반덤핑 협정」 위반 관련 결정

□ 인도네시아는 WTO 「반덤핑 협정」 제2.2.1.1조에서 ‘일반적으로(normally)’의 의미가 제품의 생산 및 판매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수출자의 기록을 무시하는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 WTO 「반덤핑 협정」 제2.2.1.1조에서는 수출국 내의 기록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르고 있고 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 비용은 일반적으로(normally) 조사 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에 기초하여 산출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호주는 왜곡된 원자재 경목 펄프(hardwood pulp)의 비용이 WTO 「반덤핑 협정」 제2.2.1.1조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환경을 벗어난 상황을 의미하므로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¹²⁷⁾

- 호주 「관세규정」의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기록된 인도네시아 업체의 펄프 비용을 반영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음

126) WTO, “Australia—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Report Of The Panel,” 2019, p. 24

127) WTO, “Australia—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Report Of The Panel,” 2019, pp. 37~38

- 그러나 호주 「관세규정」 제43조의2 자체에 ‘일반적으로(normally)’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반박 근거가 되었음
- 또한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인도네시아의 경목 펄프 생산비용이 경쟁시장의 기준 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음

- WTO의 패널은 수출자의 기록이 유사한 상품의 생산 또는 제조와 관련된 경쟁적 시장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지를 평가할 때 호주 반덤핑위원회가 정부가 주요 투입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였다고 설명하였음¹²⁸⁾
- WTO 「반덤핑 협정」 제2.2.1.1조의 첫 문장은 조사기관이 수출자가 보관한 기록을 생산원가 계산의 근거로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규정하는데, 그 기록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첫 번째 조건은 수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임
 - 두 번째 조건은 검토 중인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을 때 수출업자가 보관하는 기록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해당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조사기관은 다른 자료 출처를 계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음

- WTO 패널의 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라는 용어는 ‘정상적 또는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under normal or ordinary conditions; as a rule, ordinarily)’로 정의되며 기록에 기초하여 산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수식하는 구조임¹²⁹⁾

- 따라서 특정 행위, 즉 수출자의 기록에 기초하여 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조사기관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

128) WTO, “Australia—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Report Of The Panel,” 2019, pp. 39~40

129) WTO, “Australia—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Report Of The Panel,” 2019, p. 42

- 조사 당국에 대한 제2.2.1.1조 제1항의 의무 전체에 의미가 부여되며 수출국의 기록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무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를 명확히 증명해야 함
- 인도네시아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한 펄프 비용의 일관성에 관한 최종 보고서는 특별한 발견이 없었으며 WTO 패널은 호주 반덤핑위원회가 WTO 「반덤핑 협정」의 제2.2조 제1항과 일관되지 않은 판정을 내렸다고 결정함
 - 특히 호주의 검사 당국이 A4 복사용지의 인도네시아 국내 판매가격이 정상가격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고 결정하였음에도 호주 반덤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정상가격을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호주 반덤핑위원회가 경목 펄프의 실제 비용을 브라질과 남미 생산자들이 중국과 한국에 수출한 경목 펄프의 가격으로 대체함으로써 WTO 「반덤핑 협정」 제2.2조를 위반했으며 이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함¹³⁰⁾
 - 특히 관련 인도네시아 수출업체 중 한 곳이 목재 펄프와 최종 복사용지 제품의 통합생산업체였기 때문에 공개시장에서 목재 펄프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해외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주장함
- WTO 패널은 호주 반덤핑위원회가 중국과 한국에 대한 브라질과 남미 펄프 수출 가격을 인도네시아 펄프 원가산정 시초점으로 사용한 것은 WTO 「반덤핑 협정」 제2.2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함¹³¹⁾
 - 호주는 A4 복사용지의 생산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업체의 경목 펄프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제3국 수출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원산지 국가의 생산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WTO 「반덤핑 협정」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았음

130) WTO, "Australia—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Report Of The Panel," 2019, p. 47

131) WTO, "Australia—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Report Of The Panel," 2019, p. 46, pp. 55~56

IV. 최근 특별한 시장 상황 규정 적용 사례 79

- 호주 조사 당국은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의 경목 펄프가 저가에 자체 생산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기준가격에 반영하지 않았음
- EU-바이오디젤(아르헨티나)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조사 당국이 생산원가를 산출하기 위해 수출업자의 기록에 포함된 정보 이외의 정보에 의존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생산원가를 도출해야 하는 의무에 속한다는 패널의 판정이 있었으며, 이를 참고한 판결이었음

V. 국제비교 및 결론

1. 국제비교

가. 특별한 시장 상황 규정 비교

- 주요국은 WTO 「반덤핑 협정」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었으며,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음
- 다만 WTO 「반덤핑 협정」에서는 수출국 국내 시장의 특별한 시장 상황 또는 소규모의 판매(5% 미만) 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적인 거래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해 비교하였음
- EU 및 영국을 제외한 주요국은 특별한 시장 상황과 소규모의 판매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음
 - 미국은 통상적인 거래 예외로 수출가격 또는 수출국의 국내 판매가격과의 적절한 비교를 방해하는 특별한 시장 상황의 존재를 조사당국이 판단하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상가격에 대한 정의에서 대미 수출물량의 5% 이상일 경우 해당 국가의 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함
 - 캐나다는 관세청장이 특별한 시장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 캐나다 수출물량의 5% 미만인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호주는 특별한 시장 상황이라는 표현 대신 ‘수출국의 시장이 적절하지 않아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유사한 제품이 판매되지 않거나 적은 양만 판매되는 경우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음
- EU 및 영국은 특별한 시장 상황과 소규모의 판매를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석할 수 있음
 - EU는 반덤핑 규정을 WTO 「반덤핑 협정」과 비교했을 시 특별한 시장 상황을 동종 물품 판매가 없는 경우 및 불충분한 경우 뒤에 위치시켜 둘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영국은 특별한 시장과 낮은 판매량을 같은 항에서 규정하여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함
 - 낮은 판매의 경우 5% 미만일지라도 TRA(현 TRID)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출국의 동종 물품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고 하여, 조사국 중 소규모 판매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판단 여지를 두고 있음
- 영국과 EU의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 및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요소 중 하나로 특별한 시장 상황을 포함시켰던 EU, 캐나다, 호주와 달리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해 다른 요소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EU의 경우 특별한 시장 상황은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을 때, 상당한 물물교환 거래가 있을 때, 비상업적 가공약정이 있을 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영국의 경우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은 경우, 상당한 물물교환이 있는 경우, 가격이 비상업적인 요인을 반영하는 경우라고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생산비용 산정 방식 비교

- 주요국은 생산비용의 왜곡으로 수출국의 기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용 산정 시 예외적인 계산방식의 사용을 허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통상적인 거래에서 생산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시 다른 계산방식 또는 기타 다른 계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한 유사 규정을 도입한 EU의 경우 중대한 왜곡이 발생했을 시 다른 대표적인 시장, 국제가격 기준, 적절한 증거(중대한 왜곡 보고서)에 기초한 범위에 한한 국내 비용, 사회 및 환경보호 수준이 적절한 국가의 비용을 참고하도록 하였음
 - 캐나다의 경우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한 왜곡 효과가 없는 수출국 이외의 국가의 생산비용을 사용하되, 수출국의 생산비용을 나타내도록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WTO 상소기구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음
- 또한 EU, 호주, 영국의 경우 예외적인 계산 방식의 사용에 대해 조사당국의 재량에 따름을 직접적으로 규정에 언급하고 있음
- 또한 EU 집행위원회의 재량에 따른 비용 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다른 비용 산정방식의 도입에 대한 여지를 두었음
 - 호주의 경우 합리적인 기록에 따라 가격을 산출하나 산업혁신과학부 장관이 신뢰할 수 없는 정보라고 판단할 시 모든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자의 보관 기록을 기초로 계산하나 기록이 합리적이지 않을 시 TRA(현TRID)가 생산비용을 직접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함

다. 정부 개입 관련 내용 반영

- WTO 「반덤핑 협정」과 달리 일부 주요국은 상계관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개입에 대한 부분을 특별한 시장 상황에 적용하고 있음
- EU, 호주, 영국의 경우 정부의 개입을 특별 시장 상황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었음
- EU의 경우 중대한 왜곡 여부 평가 시 국영기업 점유율, 국가의 가격 개입 여

- 부, 차별적 공공정책 등 정부의 개입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정부의 국내 시장 개입(예: 정부 소유 기업의 존재로 인한 왜곡된 가격)이 왜곡된 경쟁조건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영국의 경우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수출 내 판매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졌을 경우 조사를 하되 정부 개입 목적은 고려하지 않도록 함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특별히 정부의 개입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의 조사당국과 캐나다의 관세청장의 판단에 따라 특별한 시장 상황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므로 조사 당국과 관세청장이 정부 개입 여부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둠

2. 결론

가. 특별한 시장 상황 관련 규정 도입 및 활용

- #### 1) 특별한 시장 상황 규정 분리 및 생산비용 왜곡 반영
- 2017년 미국을 시작으로 EU,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주요국들은 반덤핑 관련 법 및 규정 내에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정하고 있음
 - 미국은 「무역특혜연장법」 개정으로 특별한 시장 상황 규정에 따라 특별한 시장 상황 존재 시 원자재 및 제조비용 또는 가공비용에 기타 다른 계산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EU는 Regulation(EU) 2017/2321의 개정에 따라 중대한 왜곡 규정을 도입하여 관련 보고서에 따라 시장 왜곡이 있을 시 생산비용을 조사 당국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음
 - 호주는 「관세규정」에 따라 수출국의 기록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하지 않을 시 산업혁신부 장관이 해당 기록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생산 및 제조비용을 계산

할 수 있음

- 캐나다는 「특별수입조치법」 및 「특별수입조치규정」의 개정으로 특별한 시장 상황 존재 시 생산비용 산정에 관련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가격을 구성할 수 있으며, 수출국 외의 국가를 기준으로 생산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 영국은 생산비용의 산정을 위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TRA(현TRID)가 직접 생산비용을 계산할 수 있음
- 불명확한 규정의 경우 외국 정부의 공격대상이 되거나 이에 따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WTO 판례를 참고하여 보다 명확한 특별한 시장 상황 관련 규정의 도입이 필요함
- 특히 일방적으로 조사 당국이 대체가격으로 구성가격을 일방적으로 산정하는 경우 WTO 협정 위반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내용은 주요국의 규정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WTO 협정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일부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에서 동종 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 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주요국의 사례 및 WTO 협정을 참조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58조를 통상적인 특수한 시장 상황과 소규모 판매(수입국에 대한 판매량 5% 미만)로 구분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주요국의 규정 개정 방향을 고려하였을 때 시장의 왜곡효과를 수출물품의 생산비용에 반영한 것에 대해 이를 우리나라의 반덤핑 관련 규정에 도입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특수한 시장 상황 등에는 공급국 안에서의 판매량이 그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의 100분의 5 미만으로서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으며, 생산비용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이를 개정하여 수출가격과 내수가격 간의 적절한 비교를 저해하는 특수한 시장 상황이 존재한다면 조사 당국이 어떠한 덤핑마진 산정방법을 사용하여 생산 원가의 왜곡 조정을 일부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의 신설을 고려할 수 있음

2) 특별한 시장 상황에서 상계관세의 부과 검토

- 주요국은 특별한 시장 상황 관련 규정에서 보조금에 대한 시장 왜곡효과를 일부 포함하는 형태를 보임
- 자국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다루고 있으나 보조금 교부로 인해 왜곡된 시장의 원재료 혹은 부품의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반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상계관세에 대한 조사를 1995년부터 2020년까지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으나 상계관세 피소의 경우 1995년부터 2020년 누적 건수 기준, 총 31건으로 세계 제3위 상계관세 피소국임¹³²⁾
- 불공정 행위의 원인을 정부에서 찾는 상계관세의 특성상,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 의 정부나 기관, 관련 법을 평가한다는 것에서 외교적인 갈등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¹³³⁾
 - 보조금 정책 및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계관세 조사는 피조사국의 기업뿐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루어짐
 - 특히 현지실사는 피조사국 정부가 사전에 통보를 받고 또 이에 반대하지 않는

132)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월간 통계 (20. 11월 말 기준)」, 『무역구제』, Vol. 71, 2020, p. 193

133) 정재호·이재민,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제도 활용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p. 99

경우에 한하여 진행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 간의 확인이 요구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¹³⁴⁾

- 특히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인력이나 재정 측면,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쉽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외국의 보조금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보조금에 대한 요소를 반덤핑 규정으로 반영하고 있는 특별한 시장 상황 관련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반덤핑의 경우 기업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상계관세에 대한 조사보다 수월한 측면이 있음
 - 단 부품이나 원자재 등의 투입비용에 대한 왜곡으로 수출상품의 생산비용과 가격에 중대한 변화를 발생시켰다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 따라서 수출업체의 회계기록상 비용에 대해 시장 왜곡이 발생하기 이전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을 서로 비교하여 왜곡의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¹³⁵⁾

나. 수출기업의 사전준비 및 민관 협력

1) 무역위원회의 역할 제고

- 우리가 피소국이 되었을 때는 WTO 분쟁에 회부되기 전까지 그 나라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지만, 우리가 제소국일 경우 우리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게 됨
 - 따라서 우리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또한 외국 수출기업의 WTO

134) 이재민, 「상계관세 조사와 현지실사(on-site verification) 피조사국 정부차원에서의 실무적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제2호, 2009, p. 88

135) 이재민, 「반덤핑 조사에서의 PMS 판정」, 『국제통상연구』, 제23권 제4호, 2018, p. 159

- 규범 위반이나 불공정 무역에 대해 정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함
- 그러나 통계 수치가 보여주듯 우리나라는 주로 피소를 당하는 입장이며, 제소에
는 비교적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서론에 언급하였듯이 반덤핑관세 제소 건수로는 세계 제12위지만, 피제소 건
수로는 세계 제2위임¹³⁶⁾
-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해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
판정 및 구제 조치를 건의하는 기능과 산업 경쟁력 영향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적극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중요
성이 증대될 것이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무역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과
예산 등을 지속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조사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청원에 있어서도 국가의 지
원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는 인력 및 예산 부족으
로 피해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가 가능한 상황임

2) 민관 협력

- 현재도 한국의 철강 관련 제품에 대해 특별한 시장 상황 적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개별 기업이 관련 제품에 적용되는 동일한 논리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
박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기업 간 공동대응뿐 아니라 무역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은 반덤핑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한 내에 회계와 관련된 모든

136)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월간 통계(20. 11월 말 기준)」, 『무역구제』, Vol. 71, 2020, p. 192

자료를 외국 규제 당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특히 특별한 시장 상황의 경우 판단 논리가 국가별·사례별로 다르고 국제 규범 차원에서 공통된 기준과 논리 및 해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호주와 인도네시아 사례처럼 WTO 분쟁 절차를 활용하였을 시 WTO 「반덤핑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결정으로 각국 자국법에 따른 규정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제소하여 판정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한다면 장기적으로 유사한 문제의 반복 여지를 차단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3) 회계 기준에 따른 자료 정비 및 분쟁 대비

- WTO는 조사의 틀을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조사 개시 및 조사과정은 자국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므로 각국 조사 당국은 이를 수출기업에 불리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반덤핑 조사에 1년, 패널 및 항소기구 판정에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최초 조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3년 후에 위반 여부가 확정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됨
- 특히 이번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A4 복사용지 사례에서 WTO의 패널은 호주가 특별한 시장 상황 판정 시 인도네시아 수출자의 회계자료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호주의 대 인도네시아 관세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음
 -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A4 복사용지 사례에서 WTO 패널은 WTO 「반덤핑 협정」 제2.2.1.1조에 따라 수출자의 회계자료에 기초하여 원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의

무가 조사기관에 부여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WTO 패널은 특별한 시장 상황이 존재하더라도 비용 왜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수출국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결정하며 수출국 자료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특히 특별한 시장 상황 규정을 최초로 우리나라에 적용한 후 관련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은 자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증빙자료를 준비해 둘 필요성이 있음
 - 미국의 경우 상무부의 조사 관행에 대한 이해 및 준비가 필요하며 내수판매, 수출 판매 등에 관련된 요소에 대해 추정치로 보고했을 시, AFA로 불리한 덤핑마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발생비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¹³⁷⁾
 -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 사례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강관 재료인 열연에 AFA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했음에도 이를 특별한 시장 상황의 판단 요소로 사용하였음

- 반덤핑 조사는 하방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한 수출국 시장에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면 이는 곧바로 다른 수출국 시장의 조사로 이어짐
 - WTO에서는 모든 투입물은 하방 산업 상품가격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이라고 인정하고 있음¹³⁸⁾
 - 예를 들어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왜곡된 낮은 가격의 열연강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유정용 강관 생산자의 생산비용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왜곡이 없었다면 유정용 강관의 생산비용은 더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미국이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에 특별한 시장 상황을 적용한 이후 원재료인 열연강을 주요 소재로 하는 부품들이 연이어 특별한 시장 상황 적용을 받은 것을 고려

137) 김만길, 「미국과 EU의 특별시장 상황(PMS) 적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전자무역연구』, 제17권 제2호, 2019, p. 127

138) 주현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수단으로서 특별한 시장 상황(PMS)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무역구제』, Vol. 60, 무역위원회, 2017, p. 45

해 볼 때, 관련 업종의 기업들은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특히 미국과 EU, 호주 등이 중국에 대해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 이를 원료로 쓰는 업체는 각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련 조치를 상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국내 자료>

- 강민지,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법 개정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 공수진, 「BREXIT와 영국 무역구제제도 현황 및 전망」, 『무역구제』, 제64권, 무역위원회, 2019, pp. 15~24.
- 김경화, 「미국 특별시장 상황 적용관행의 변화와 국제무역법원 판정의 시사점」, 『KITA 통상 리포트』, 제5권, KITA, 2020.
- 김만길, 「미국과 EU의 특별시장 상황(PMS) 적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전자무역 연구』, 제17권 제2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9, pp. 111~133.
- 김영주, 『2018 한·미 통상 현안 사례 분석집』 한국무역협회, 2019.
-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통계('20. 11월말 기준)」, 『무역구제』, 제71권, 무역위원회, 2020, pp. 186~191.
- 삼정회계법인, 『반덤핑 조사 시 비시장경제국 적용에 관한 연구』, 삼정회계법인, 2002.
- 신명호·곽범수·이경수, 『캐나다 수입규제제도 및 대응 매뉴얼』, 외교통상부, 2018.
- 이재민, 「상계관세 조사와 현지실사(on-site verification)-피조사국 정부차원에서의 실무적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9. 11, pp. 85~110.
- _____, 「반덤핑 조사에서의 PMS 판정」, 『국제통상연구』, 제23권 제4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18, pp. 122~168.
- 이효영,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논의와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시사점」, 『무역구제』, 제68권, 무역위원회, 2020, pp. 9~16.
- 장승화, 「미국 무역특혜확장법(TPEA)상 “특별시장상황(PMS)”의 WTO 합치성: 한국산 철

- 강제품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치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 pp. 7~47.
- 정찬모, 「미국 반덤핑법상 특별한 시장 상황의 적용과 WTO협정」,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7, pp. 45~69.
- 정재호·노영예·박지우, 『주요국의 수입규제제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a.
_____, 『주요국의 반덤핑 직권조사 규정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b.
- 정재호·이재민,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제도 활용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정경록,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KIET 산업경제』, 2020년 5월호, 산업경제연구원, pp. 74~79.
- 정혜선, 「최근 미국의 특별시장 상황(PMS) 적용과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제13호, KITA, 2018.
- 주현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수단으로서 특별한 시장상황(PMS)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무역구제』, 제60권, 무역위원회, 2017, pp. 37~56.
- 주호주 한국 대사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호주 수입규제(반덤핑) 대응 매뉴얼』, 2013.
- KIEP 북경사무소, 『중국 WTO 가입 15주년 회고와 전망』, 제20권 제3호, KIEP, 2017.

〈해외 자료〉

- Anti-Dumping Commission, *Dumping and subsidy manual*, Australian Government, 2018.
- European Commission, *Possible change in the calculation methodology of dumping regard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6.
- James Maeder, *Senior Director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Results of the 2014-2015 Administrative Review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2017.
- _____,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in the Less-Than-Fair-Value Investigation of Large*

- Diameter Welded Pipe from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2019. 2. 19.
- _____, *Decision Memorandum for the Preliminary Results of the 2017-2018 Administrative Review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on 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2019. 11. 6.
- _____,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Results of the 2017-2018 Administrative Review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on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Republic of Korea*, 2020. 7. 6.
- _____,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Results of the 2017-2018 Administrative Review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on 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 from the Republic of Korea*, 2020. 11. 2.
- WTO, “Australia—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Report Of The Panel,” 2019. 12. 4.

〈법령〉

Tariff act of 1930
19 U.S.C 1677

〈전자자료〉

외교통상부, <http://www.mofa.go.kr/>
KIEP, 「미·EU·일 공동성명에 나타난 WTO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방향: 평가와 시사점」,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act=view&list_no=3444&cg_code=, 검색일자: 2021. 3. 16.
KITA, <https://www.kita.net/>
미연방관보, <https://www.federalregister.gov/>

- _____, “Dates of Application of Amendments to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Made by the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5/08/06/2015-19353/dates-of-application-of-amendments-to-the-antidumping-and-countervailing-duty-laws-made-by-the-trade>, 검색일자: 2020. 1. 5.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https://enforcement.trade.gov>
- 영국 국제무역부, <https://www.gov.uk>
- 영국 법률제공포털, <https://www.legislation.gov.uk>
- 영국 의회, “UK trade remedies policy,” <https://committees.parliament.uk/work/492/uk-trade-remedies-policy/>, 검색일자: 2021. 2. 23.
- 캐나다관보, <https://canadagazette.gc.ca/accueil-home-eng.html>
- 캐나다 법률제공포털, <https://laws-lois.justice.gc.ca/eng/>
- 코넬법률정보포털, “19 U.S.C 1677,”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677>, 검색일자: 2021. 1. 5.
- 호주 반덤핑위원회, <https://www.industry.gov.au/regulations-and-standards/anti-dumping-and-countervailing-system>
- 호주 연방 입법부, “Customs Amendment (Anti-dumping Improvements) Bill (No. 2) 2011,”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1B00245/Explanatory%20Memorandum/Text#_Toc297899522, 검색일자: 2020. 12. 31.
- _____, “Customs Act 1901,”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7C00219> 검색일자: 2021. 1. 5.
- _____, “Customs (International Obligations) Regulation 2015,”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5L00373>, 검색일자: 2021. 2. 4.
- EU 집행위원회, “On significant distortions in the econom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the purposes of trade defence investigations,”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0/october/tradoc_158997.pdf, 검색일자: 2021. 2. 1.

- EU 법령제공포털, <https://eur-lex.europa.eu/homepage.html?locale=en>
- Charles Zhan, *Australia's anti-dumping excuse against Indonesia is paper-thin says WTO*, Moulis Legal, <https://moulislegal.com/australias-anti-dumping-excuse-against-indonesia-is-paper-thin-says-wto/>, 검색일자: 2021. 1. 12.
- Congress.gov, "H.R.1295 -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1295/text>, 검색일자: 2020. 12. 9.
- JUSTIA, "Dong-A Steel Co. v. United States, No. 19-00104 (Ct. Int'l Trade 2020),"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cit/19-00104/19-00104-2020-09-29.html>, 검색일자: 2021. 2. 17.
- TEREPOSKY & DEROSE LLP, "Canada implements new anti-rules targeting related-company input dumping and "particular market situation" input distortions," <https://tradeisds.com/canada-implements-new-anti-dumping-rules-re-input-cost-distortions> 검색일자: 2021. 1. 27.
- WTO, "Australia—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29_e.htm 검색일자: 2021. 2. 12.

관세연구 20-04
주요국의 반덤핑 규정상
특별한 시장 상황 및 관련 사례 연구

발 행 2020년 12월 31일
저 자 정재호 · 노영예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거목정보산업(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ISBN 979-11-6655-045-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